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1. 10. (수요일), 14:00 ~ 17:5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 의 사 항】

1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공 개)
2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4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5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6	정읍 고사부리성 내외 진입로 정비	(공 개)
7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 개)
8	서울 탑골공원 내 서문, 담장 일부 철거 및 수목 식재	(공 개)
9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공 개)
10	홍성 홍주읍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1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용정지구) 개보수	(공 개)
12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선바위지구) 개보수	(공 개)
13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공 개)
14	남한산성 내 안테나 및 저압전주 설치	(공 개)
15	영월부 관아 내 조형물 설치	(공 개)
16	경주 남산 일원 내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17	경주 진덕여왕릉 주변 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 신축	(공 개)
18	진도 용장성 내외 터널 정비	(공 개)
19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공 개)
20	북한산성 주변 탐방로 전기 및 이동통신 선로 재정비	(공 개)
21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2	양양 오산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3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4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5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6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7	파주 오두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8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9	파주 해음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0	파주 이이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1	파주 덕진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32	탕춘대성(연용서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3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공 개)
【보고사항】		
34	2024년도 유적관리소 보수정비계획 보고	(공 개)
3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4-01-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40-13번지(99.0㎡)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추가 지정 예고기간동안 별도 접수 의견 없음.[문화재청 공고 제2023-396호 (2023.11.15.)]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 면적 : 1,518필지, 410,693.2㎡
 - 추가지정 : 1필지, 99.0㎡(풍납동 140-13)
 - 추가지정 후 면적 : 1,519필지, 410,792.2㎡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3.10.30.)
 - (풍납동 140-13) 해당 지역은 서울 풍납토성 보존구역 내 Ⅱ권역(지정·매입 필요권역)으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13	대	99.0	99.0		

2.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 1차 위원회('16.01.13.)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19년 10차 위원회('19.10.02.)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88-38(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19년 10차-부결	금회	비고
대지면적/건축면적	407㎡ / 98.70㎡	좌동	
구조	일반목구조 / 한식골기와 / 팔작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 한식골기와 / 팔작지붕	
최고높이	지상1층, 5.6m	좌동	
토목	굴착깊이 : 0.3m	굴착깊이 : 0.6m	

(4)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김호장군의 후손으로서 고택의 관리 및 제반사항을 도모하고 고택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22./문화재위원 ○○○)

- 문화재구역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재 지정 구역에 건축행위는 지양될 필요가 있어 부정적임

(2) 현지조사의견('19.09.09./문화재위원 ○○○, ○○○)

- 해당 신청부지는 현재 농지(전)로 과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택의 배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고택이 쉽게 조망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또한,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3.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01-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 : 803㎡ / 99.78㎡
 - 구조/층수/높이 : 한식목구조 / 지상 1층 / 7.2m
 - 한식담장 : 높이 1.25m, 길이 105m
 - 절토고 : 0.4m~0.6m / 성토고 : 0.2m~0.3m
- (4) 신청인 의견
 - 한국 고유양식에 맞춰 전통한옥건축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미관을 유지하도록 한식 목구조 양식의 한옥으로 신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22./문화재위원 ○ ○ ○)
 - 월성과 남산사이에 있는 부지에 한식 건물(높이 7.2m)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월성과 남산의 연계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부정적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4.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방동 와요지(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5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설치면적 : 792㎡ / 502.8㎡
 - 건축물 높이/태양광 구조물 높이 : 7.2m / 1.83m
 - 설치 후 최고높이 : 7.781m
 - 설치용량 : 54.6kW 2개소(총 109.2kW)
- (4) 신청인 의견
 - 기존 건축물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22./문화재위원 ○○○)
 - 동방동 와요지에서 41m 이격된 2구역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남측 전면에 설치된 태양광판은 문화재 경관에 큰 문제가 없으나, 후면에 설치된 태양광판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조정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5.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1차 소위원회('22.01.26.)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패릉리 산17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32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2년 소위1차-부결	금회	비고
대지면적/건축면적	624㎡ / 99.63㎡	605㎡ / 94.78㎡	
구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최고높이	지상1층, 5.53m	지상1층, 5.516m	
토목	터파기 : 170.09㎡, 되메우기 : 73.43㎡, 절토고 : 0.6m, 석축(H=0.0~0.6m) L=28m	좌동	

(4) 신청인 의견

- 본 신청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주변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2.01.14./문화재위원 ○○○)

- 원성왕릉 전면에 단독주택을 계획한 것으로 전면에 열려있는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6. 정읍 고사부리성 내외 진입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 내외 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읍 고사부리성 내외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정읍 고사부리성(사적 / 2008.05.28. 지정)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진입로 정비>

○ 위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등(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1) (진입로) 연장 384m, 폭 4m, 흙콘크리트 포장 1768.5㎡, 잔디블럭포장 235㎡

* 현 도로 폭 2.2~2.5m

2) (배수로) 측구 수로관 553m, 횡배수로관 16m, 거친돌측구배수로 18.1m, 우수관 및 맨홀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도로의 폭, 소재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7.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낙산성곽서1길 26)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443번지(문화재보호구역)
 - 규모 및 구조 : 지상 2층,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 사업내용
 - 증축규모

구분	현행	변경 후	증감
대지면적	100.00㎡	100.00㎡	-
건축면적	25.79㎡	33.59㎡	(증) 7.80㎡
연면적	39.67㎡	44.57㎡	(증) 4.90㎡

- (층별)증축개요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
1층	24.55㎡	30.69㎡	(증) 6.14㎡
	1.24㎡	-	화장실 철거
소계	25.79㎡	30.69㎡	(증) 4.90㎡
2층	13.88㎡	13.88㎡	테라스 설치(4.9㎡)
소계	13.88㎡	13.88㎡	변동없음
합계	39.67㎡	44.57㎡	(증) 4.9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19./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2층 건물의 2층 바닥 테라스를 4.9㎡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현황을 볼때, 높이의 변화는 없으며 2층 밖의 테라스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8. 서울 탑골공원 내 서문, 담장 일부 철거 및 수목 식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탑골공원」 내 서문, 담장 일부 철거 및 전통수목 식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탑골공원 내 서문과 서문추정지에서 삼일문 사이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탑골공원(사적 / 1991.10.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외
- (3) 신청내용<서문, 담장 일부 철거 및 수목 식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철거대상
 - 범위 : 서문, 서문추정지에서 삼일문 사이 담장
 - 규모 : (현)서문, 담장 L=104.5m, H=1.5m
 - 수목식재
 - 위치 : 철거된 담장 부분
 - 규모 : 화살나무 등 전통 수목 L=92.25m, H=0.6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9.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건물상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의사총(사적 / 2001.08.17. 지정)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 외
- (3) 신청내용<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길 5(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 /3구역, 공통사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69㎡
 - 기존 건축면적/연면적 : 543.63㎡/674.42㎡
 - 기존 건축규모 : 지상 2층 1동, 최고높이 7.55m
 - 기존 건축구조(지붕형태) : 일반철골조[기타(판넬)지붕]
 - 태양광발전시설 신축
 - 설비용량 : 71.5kW / 태양광모듈 면적 : 330.759㎡
 -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 높이 : 9.56m(기존건축물 지상 2층 7.55m, 태양광모듈 2.01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0. 홍성 홍주읍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홍성 홍주읍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1년 8차 소위원회('21.11.2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1년 9차 소위원회('21.12.22.) 보류 : 공동주택의 최고높이 조정 필요
 - '22년 1차 소위원회('22.01.26.) 조건부가결 : 높이 및 외벽 컬러 등 관계전문가 자문 득하여 시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 1972.10.14. 지정)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87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5m 이격/7구역, 공통사항(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개별검토))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비고
대지면적	32,488㎡	33,854㎡	증 1,366㎡
건축면적	7,459.20㎡(22.96%)	6,027.96㎡(18.56%)	감 1,431.24
연면적	96,620.35㎡(205.52%)	96,419.35㎡	감 201㎡
층수/동수/높이	11~18층/11개동/52.3m	12~18층/11개동/52.3m	최고높이 변경 없음
세대수	573세대	564세대	감 9세대

라. 참고사항

(1) 조건부 승인 당시 보완계획서 자문의견('22.02.14./문화재위원 ○○○)

- 건물의 배치 방향과 읍성의 중심공간에서 보이는 경관 등에 있어서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 있는 스카이라인이 구성되도록 층수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됨.
- 또한 건물 외벽의 색채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명도와 채도의 색으로 계획되었다고 생각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벽 색상은 명도와 채도를 낮출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1.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용정지구) 개보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용정지구) 개보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내외에 위치한 지방관리 방조제(용정지구)의 개보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해안 일대)

(3) 신청내용<지방관리 방조제(용정지구) 개보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101, 878-5(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제1공구	제2공구
신청면적	8,058㎡	5,057㎡
구간길이	382m	415m
방조제 독마루	▲ 계획고 : EL. 7.0~7.3m(변동 미미) ▲ 폭 : 5.8m(기설치 독마루4m, 바다측으로 1.8m 증) ▲ 천단콘크리트 : T=0.2m, B=1.8m	▲ 계획고 : EL. 6.1m(변동 미미) ▲ 폭 : 4m(기설치 독마루3m, 바다측으로 1m 증) ▲ 천단콘크리트 : T=0.2m, B=1m
방조제 사면	▲ 사면경사 : 1:1.5(이전 1:1.2)	좌동
근고공	▲ 폭 : 8m (당초 0~9m) ▲ 두께 : 1.7~2.5m(사석+피복석2열) [당초 0~1.5m(사석)]	▲ 폭 : 5m (당초 3m) ▲ 두께 : 2.2m(사석+피복석2열) [당초 1.7m(사석)]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12.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선바위지구) 개보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내외 지방관리 방조제(선바위지구) 개보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내외에 위치한 지방관리 방조제(선바위지구)의 개보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해안 일대)

(3) 신청내용<지방관리 방조제(선바위지구) 개보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50-2 일원(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신청구간 : 173.6m(공사용 가도구간 19.6m, 보강구간 154m)
 - 보강구간 공사계획

구분	보강 A구간	보강 B구간	비고
구간길이	104m	50m	
방조제 독마루	▲ 계획고 : E.L. 5.7m(미미한 변동) ▲ 폭 : 4m(기설 독마루3m, 바다측으로 1m 증) ▲ 천단콘크리트 : T=0.2m, B=1m	좌동	
방조제 사면	▲ 사면경사 : 1:1.5(이전 1:1.2) ▲ 사면해체 : E.L.2.8~5.7m	좌동 ▲ 사면해체 : E.L.3.6~5.7m	
근고공	▲ 폭 : 4m (2m 증) ▲ 두께 : 1.5m(사석+피복석2열)	좌동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3.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농막)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 1970.10.01. 지정)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2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설치면적 : 18㎡(3m×6m)
 - 건물높이 : 2.5m
- (4) 신청인 의견
 - 농사를 위한 창고를 설치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4. 남한산성 내 안테나 및 저압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내 안테나 및 저압전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내 육군 통신장비 전력화용 안테나 및 저압전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 (3) 신청내용<안테나 및 저압전주 설치>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2-10(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점용면적 : 192㎡(64㎡×3분)
 - 설치수량 : 안테나(가로8m×세로8m×높이10m) 3기, 저압전주 2본(높이 10m)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성남시/2023.7.21. ○ ○ ○(○ ○ ○ ○ 박물관), ○ ○ ○(○ ○ ○ ○ 박물관))
 - 신청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이미 원지형이 변형된 상태이고, 설치예정 시설물이 경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사업 시행 시 참관조사를 실시하는게 좋겠음. 참관 조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시 적법한 절차 이행 필요.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5. 영월부 관아 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영월부 관아」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부 관아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사적 / 2016.03.08.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 (3) 신청내용<조형물 설치>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6-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점용면적 : 4.5㎡(3m × 1.5m)
 - 최고높이 : 18.2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6. 경주 남산 일원 내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 내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 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68(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 : 819.00㎡ / 98.80㎡
 - 구조/층수/높이 : 한식목구조 / 지상 1층 / 6.31m
 - 터파기/되메우기 : 84.5㎡ / 79.4㎡
- (4) 신청인 의견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전통 한식 목구조 양식의 한옥으로 신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11./문화재위원 ○ ○ ○)
 - 상기 신축 건물은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 신축시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이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7. 경주 진덕여왕릉 주변 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진덕여왕릉」 주변 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진덕여왕릉 주변 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진덕여왕릉(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0(문화재구역으로부터 81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 : 199㎡ / 49㎡
 - 구조/층수/높이 : 경량철골조 / 지상 1층 / 3.2m
 - 작업로 주변 횡단배수로 : 3개
-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는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높이 3.2m의 가설건축물(산림경영관리사)를 적법한 관계규정에 맞게 설계하여 주변경과 조화롭게 신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11./문화재위원 ○○○)

- 가설건축물은 지대가 높아 건축물이 도드라지게 보이며, 건물 건축시 주변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진덕여왕릉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이 조망 될 수 있고 이미 아래에 가설 건축물이 등이 있어 별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8. 진도 용장성 내외 터널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진도 용장성」 내외 터널 정비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용장성 내외 터널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 (3) 신청내용<터널 정비>
 - 위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42-5(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터널 상부 터파기(8,384m³) 및 되메우기, 기존 수목 굴취 및 식재, 터널 좌우 맹암거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9.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파사성 내 탐방로 주변 나대지에 관목 및 초화류 등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및 토사유실 방지와 파사산 정상에 정상석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차 위원회('23.12.13.)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파사성(사적 / 1977.07.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 (3) 신청내용<경관개선 등>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파사성 탐방로 주변 나대지 및 파사산 정상
 - 사업면적 : 1,552㎡
 - 식재수종(수량) : 개나리(800주), 산철쭉(8,053주), 백철쭉(1,433주), 회양목(330주), 조팝나무(366주), 구절초(3,580본)
 - 시설물 : 정상석(화강석, 400×1,200×150mm)
- (4) 신청인 의견
 - 여주 파사성을 찾는 관람객의 사계절 볼거리 제공 및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성곽 탐방로 주변에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람객들의 포토존 마련을 위해 정상석을 설치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28./문화재위원 ○○○, ○○○)

- 본 건은 여주 파사성 성곽 탐방로 주변에 초화류 식재와 정상석 설치를 신청한 건임. 경관개선 및 토사유실 방지 차원도 있다하나, 기존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안과 발굴로 확인된 건물지 위치 등을 반영하여 식재 계획을 해야 함. 유적과 성곽 경관 등 역사문화환경의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식재는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중요한 유구가 발굴된 구간(4구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0. 북한산성 주변 탐방로 전기 및 이동통신 선로 재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북한산성」 주변 탐방로에 전기 및 이동통신 선로의 재정비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북한산성 주변 탐방로(범용사~북한산 대피소 인근)의 전기 및 이동통신 선로 재정비(고압수배전반 및 케이블관로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 1968.12.0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탐방로 전기 및 이동통신 선로 재정비>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번지 1호{문화재구역과 연결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63㎡(수배전반 43㎡, IP전주 17㎡, 선로(ELP) 103㎡)
 - IP주(2.5m~5.8m) 17개소, 고압수배전반(4×4×3m) 4개소
 - 선로(노출) L=1,374m, W=70m/m(ELP관 1줄)
 - 선로(매설) L=12.2m, W=70m/m(ELP관 1줄)
- (4) 신청인 의견
 - 북한산성 탐방로 전기·광을 재정비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본 사업은 북한산성 탐방로 주변 전기·통신을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관련 불편 사항이 접수된 적이 없는 바 불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성벽 바로 앞의 신규 IP설치 등은 경관을 훼손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21.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윤관장군묘(사적 / 1988.02.27.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번지 외

(3) 신청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1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 /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592m²
- 건축면적/연면적 : 131.22m² / 131.22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전벽돌, 한식기와)
- 층수/최고높이 : 1층 / 5.5m
- 구조물 : 옹벽 H=0.0~2.5m, L=61.5

(4) 신청인 의견

- 본 필지에서 오랫동안 경작을 하여 왔으나, 주변 교통 및 건축물 증가로 많은 유동인구 증가로 더 이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허가를 받고자 함.

문화재 경계부분에는 한옥 담장을 설치하고 건축물도 현지반보다 낮게 신축하여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명, 보류 11명

22. 양양 오산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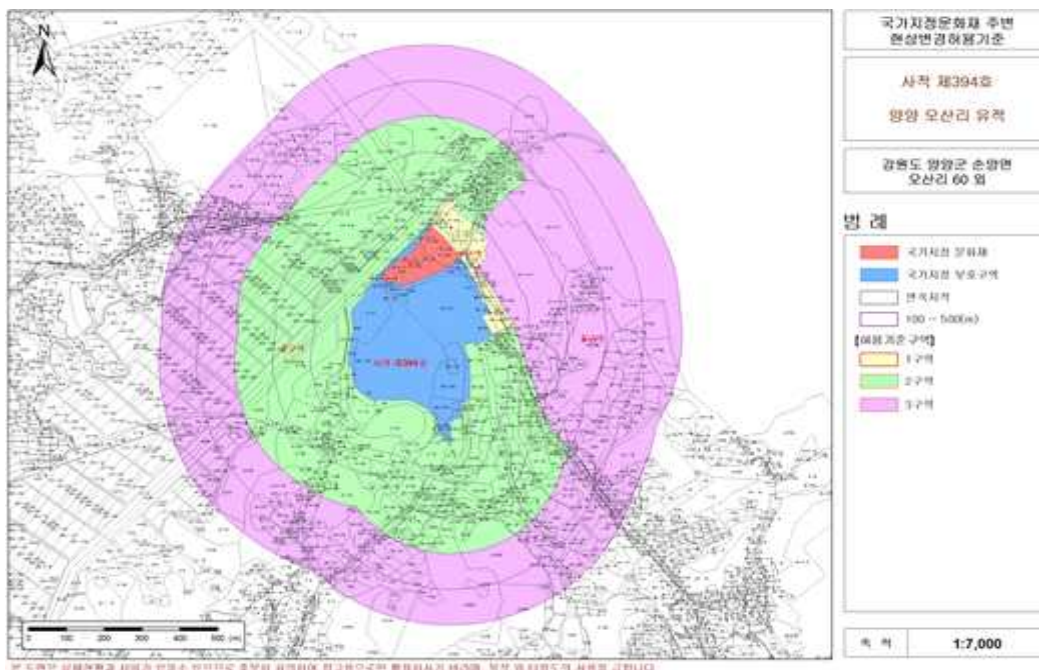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양양 오산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양 오산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9.12.~10.1. (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오산리 유적(사적 / 1997.04.18.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1.31.)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3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양양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지침 준 용 하 여 발전시설 (태양광 등) 추가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11명

23.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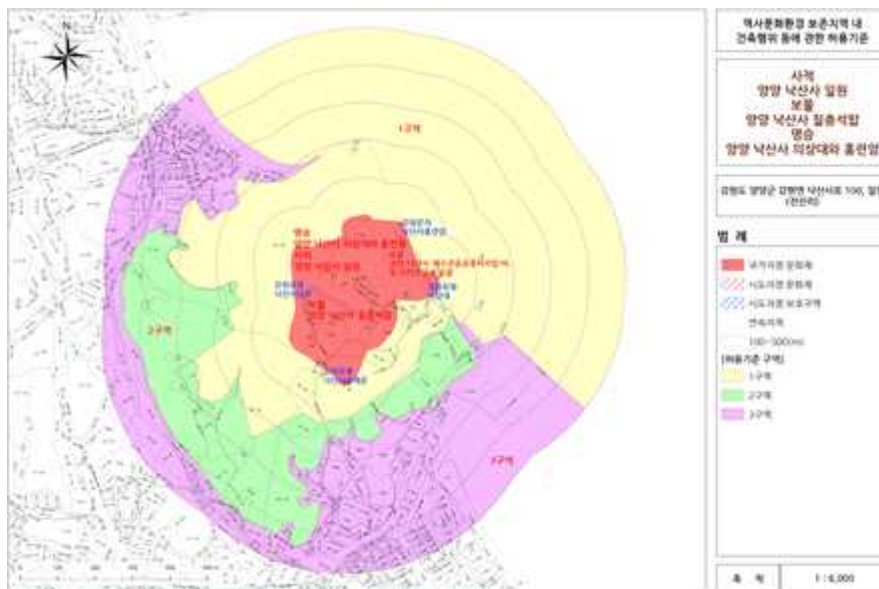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양양 낙산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9.12.~10.1.(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 2008.12.18. 지정),
양양 낙산사 칠층석탑(보물 / 1968.12.19. 지정),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 2007.12.07.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2.22.)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낙산사 종교시설에 한하여 1층 규모 허용 - 다만,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시행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양양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표준문구 사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지침 공통사항 반영하여 태양광 추가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11명

24.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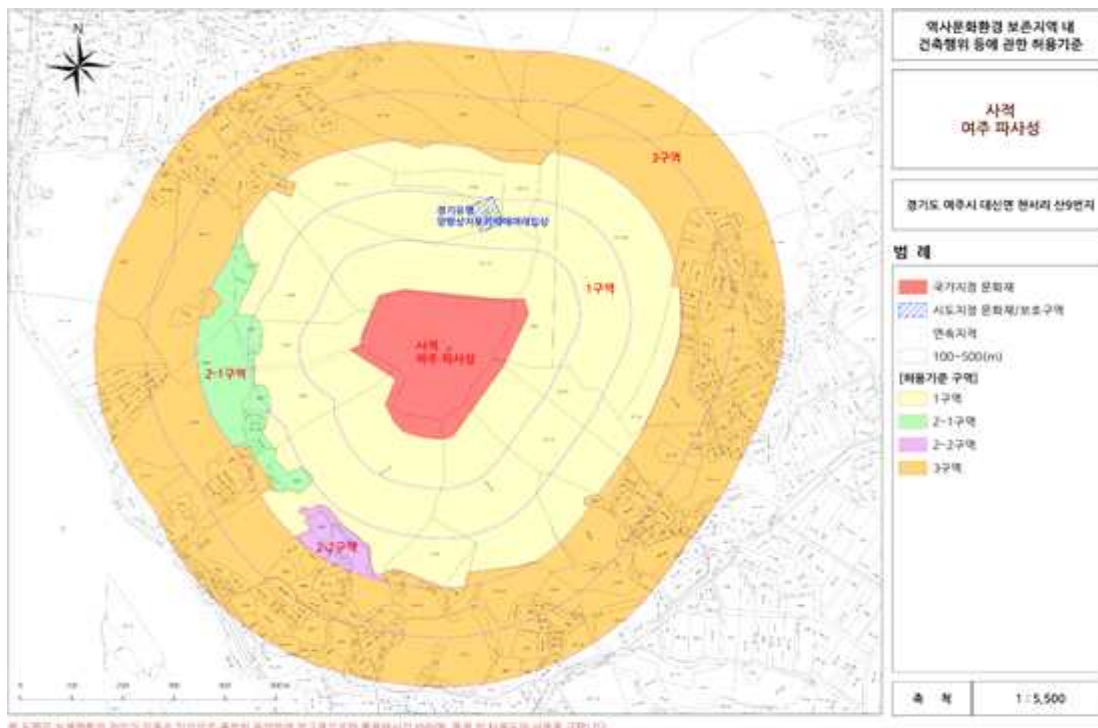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파사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파사성(사적 / 1977.07.21.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6.12.30.)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조정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양평군 군계 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행정구역 명확화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에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 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불필요한 내용 삭제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 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 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 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개별검토 대상 명확히 함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5.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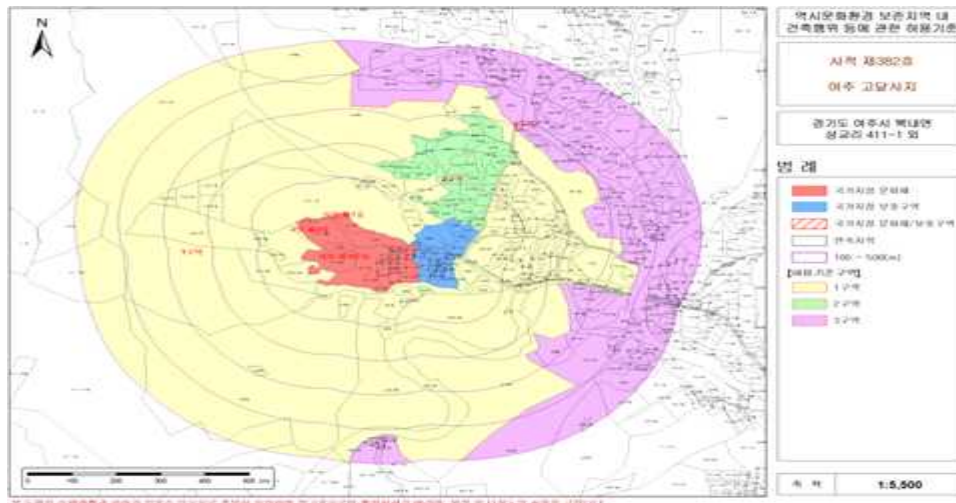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고달사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고달사지(사적 / 1993.7.23. 지정), 여주 고달사지 승탑(국보 / 1962.12.20. 지정),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 1963.1.21. 지정),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보물 / 1963.1.21. 지정),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보물 / 1963.1.21. 지정),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6.12.30.)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 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 르되, 성토로 지표면에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불필요한 내용 삭제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 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 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토지·임야의 형질변경은 개별심의 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 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대상 명확히 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6.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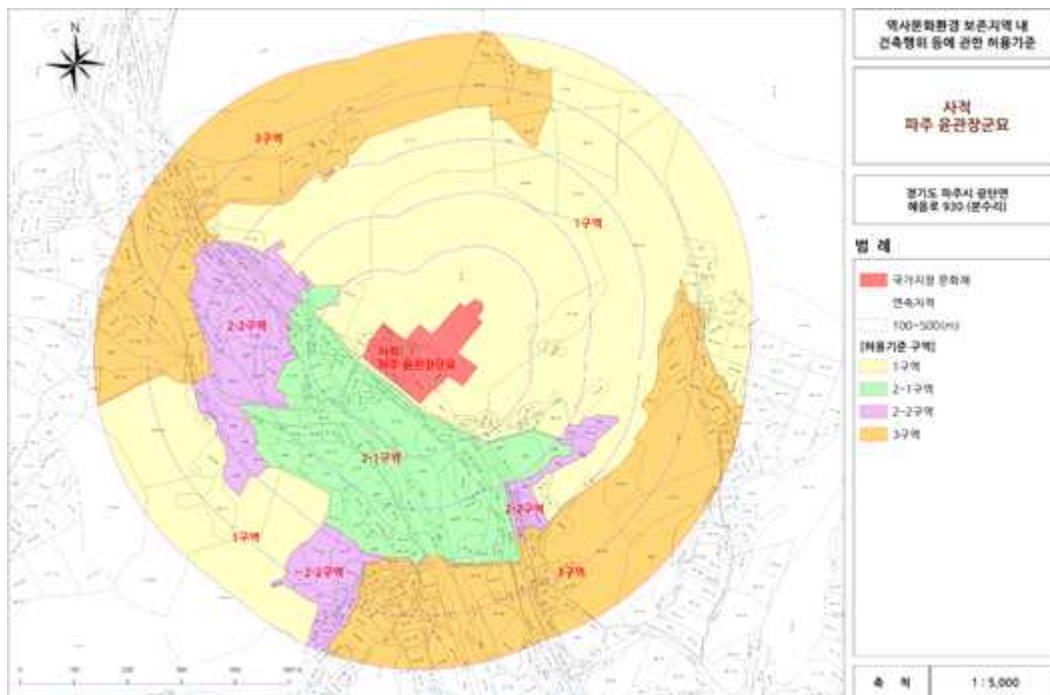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윤관장군묘(사적 / 1988.2.2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12.4.)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등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등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 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이 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7. 파주 오두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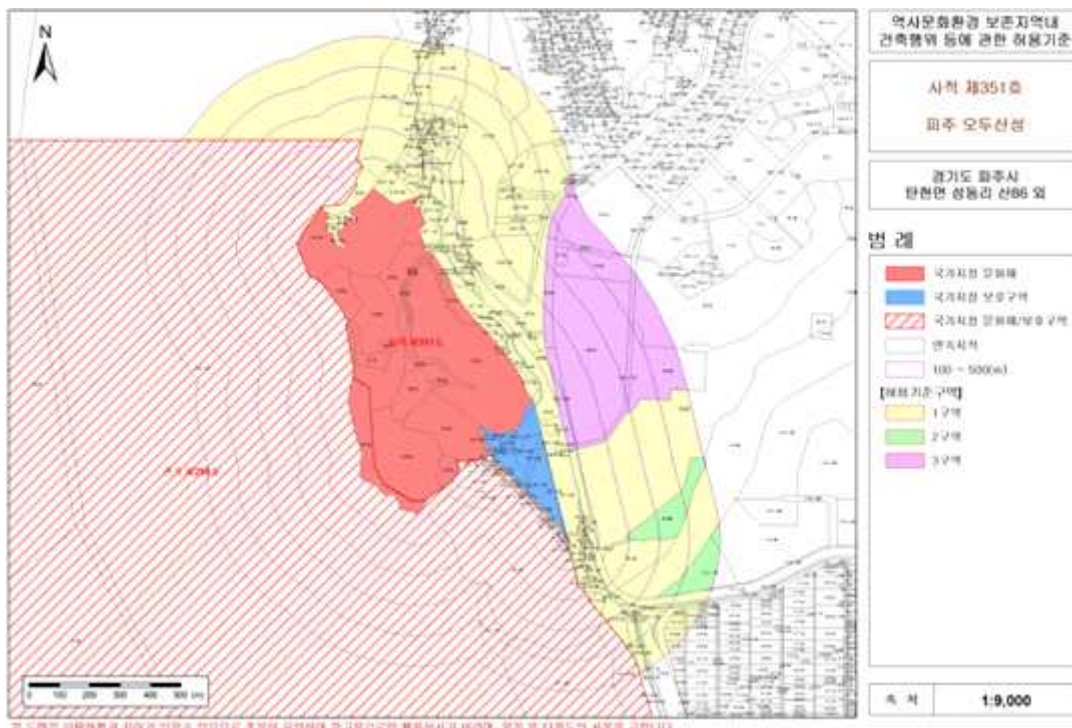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오두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오두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오두산성(사적 / 1991.08.24.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12.4.)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 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 은 개별 검토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8.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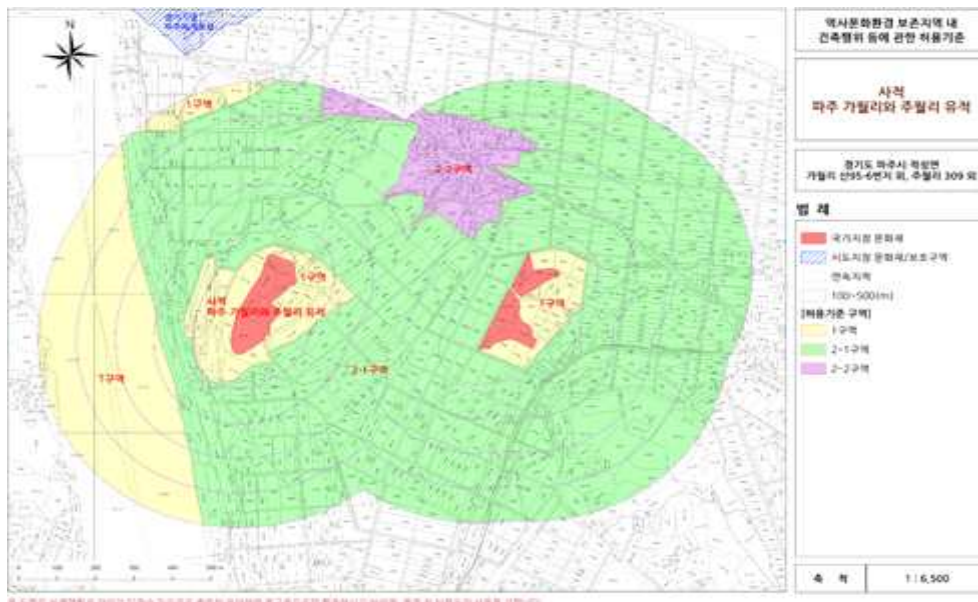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 (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사적 / 1994.12.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2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7.8.29.)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신설>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 은 개별 검토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신설>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 공통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은 개별 심의함		○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사업 시행 전 입회조서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29. 파주 혜음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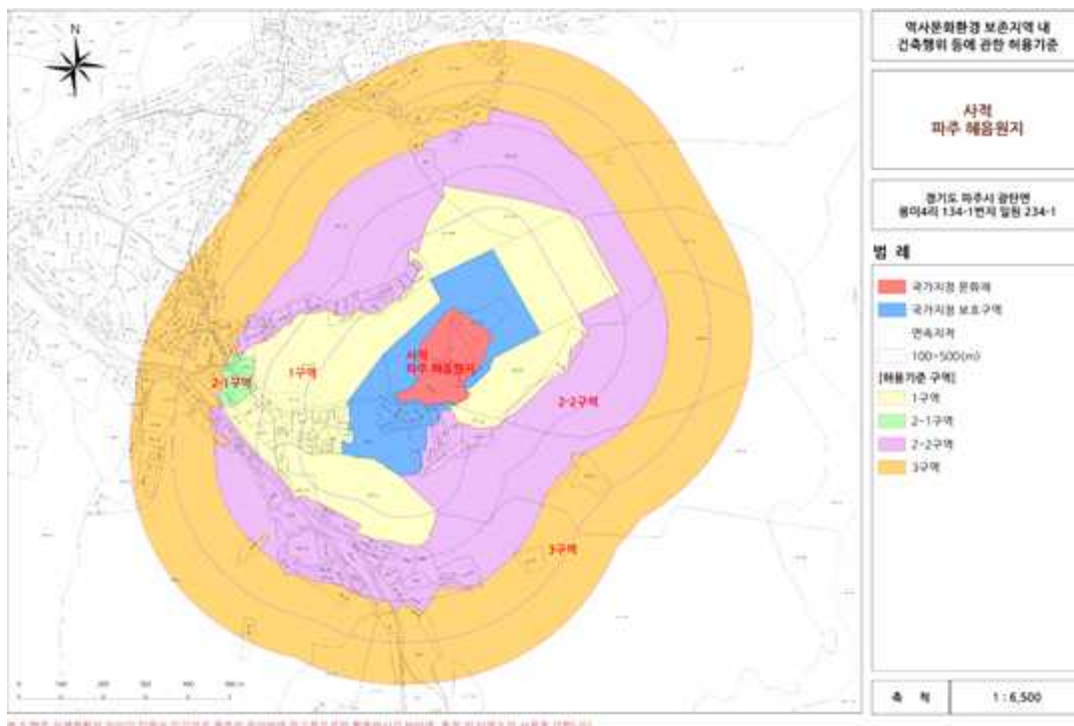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혜음원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혜음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혜음원지(사적 / 2005.06.13.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5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5.12.31.)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검토함.		발전시설 (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신설>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 공통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30. 파주 이이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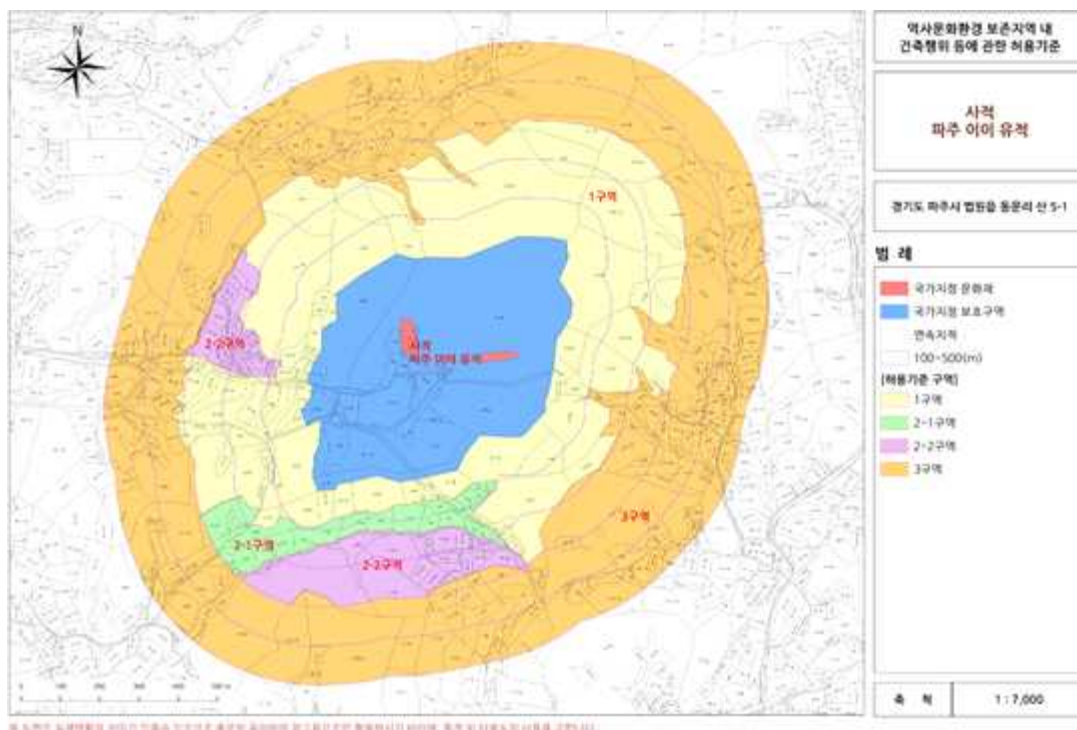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이이 유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이이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이이 유적(사적 / 2013.02.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12.4.)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 은 개별 검토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단, 4구역의 제외)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범위명확 화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31. 파주 덕진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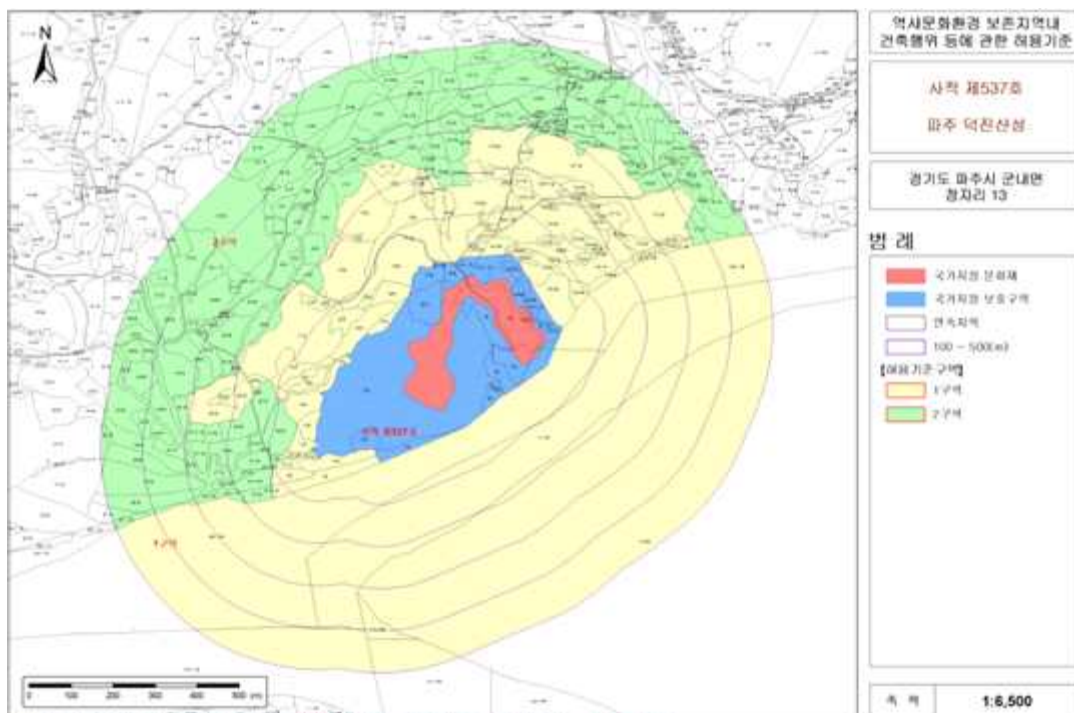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덕진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덕진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2.6.~12.25.(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진산성(사적 / 2017.01.1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5.12.31.)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 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 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발전시설 (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신설>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 공통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검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4-01-032

1. 탕춘대성(연용서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탕춘대성(연용서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탕춘대성(연용서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탕춘대성(蕩春臺城,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3-23번지 외
- (3) 지정명칭 : 탕춘대성(蕩春臺城)(연용서성(鍊戎西城))/Tangchundaeseong Fortress(Yeonyoongseoseong Fortress))
- (4) 지정범위
 - 성벽길이 : 성벽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
 -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7필지 11,065㎡, 문화재보호구역 68필지 204,962㎡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5) 관리단체(안) : 서울특별시
- (6) 신청사유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탕춘대성(연용서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기존 도성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715~1754년에 걸쳐 축조한 성으로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3성이 하나의 방어 성곽으로서 기능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가지며,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산 능선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토석, 석성으로 합리적으로 축조한 점, 유적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고 이와 관련한 창고시설과 다양한 유적들이 잘 남아 있는 점 등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판단됨
 -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라. 참고사항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1976.06.25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08.14.)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탕춘대성(연유서성)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23.09.15.)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3.11.23.)

(2) 주요 학술대회

연도	주최·주관	학술대회 주제
2022	서울특별시	탕춘대성, 사적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3) 현지조사의견('23.11.2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 축조이후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성곽으로 인왕산부터 북한산 향로봉을 산마루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특성을 보이는 성곽이다.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에서도 사례가 없는 특징적인 성곽으로 유구 또한 잔존상태가 좋고 사진, 지도 등의 자료가 잘 남아있어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명칭은 '탕춘대성'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11.23.(목)	대상 문화재	탕춘대성(蕩春臺城)(연융서성(鍊戎西城))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	건축사	○○대학교
		○○○	성곽	○○대학교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탕춘대성(蕩春臺城)(연융서성(鍊戎西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 · 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37필지, 11,065㎡/“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68필지, 204,962㎡/“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장 귀하				

탕춘대성(蕩春臺城)[연용서성(鍊戎西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11. 23.(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탕춘대성(蕩春臺城)[연용서성(鍊戎西城)]

■ 성(城)의 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

- 해방 이후 출간된 대부분 서적에는 탕춘대에 축성된 성의 명칭과 관련하여 성을 쌓을 동안에는 서성(西城)으로 불리어졌고 이후 ‘탕춘대성(蕩春臺城)’으로 정식 명명되었다거나(『서울의 전통문화』) 혹은 성의 명칭이 ‘탕춘대성’인 것은 ‘현재 세검정이 있는 동쪽으로 약 100m 되는 산봉우리에 연산군의 놀이터였던 탕춘대(蕩春臺)가 있었으므로 그 이름을 딴 것’이고 도성의 서쪽에 있어 ‘서성(西城)’이라고 한다거나(『서울의 성곽』) ‘탕춘대성’은 세검정 동편 봉우리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탕춘대에 연유하는데, 그러한 위치 관계로 ‘탕춘대성’ 또는 ‘서성(西城)’으로 불리어진 것(『서울건축사』)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료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사료됨
- 실제로 숙종~일제강점기까지의 문헌자료 및 지도상에는 탕춘대에 축조된 성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은 없으며 문헌에는 대다수 탕춘대(蕩春臺)라는 명칭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북한지 등 문헌에 그 기록이 있으며 동국여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도에는 서성(西城)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음
- 19세기 지도 <<동국여도>> 내 <연용대도>에는 탕춘대성(蕩春臺成)의 모습이 상세히 잘 남아 있음. 수도방어를 강화하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곽으로 내부에 충융청, 조지서, 평창 등 주요 기관들도 표시되어 있고 영조 30년(1754)에 탕춘대를 연용대로 고쳤던 기록의 증거이다. 이것을 근거로 향후 성의 명칭도 지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향후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세계유산 통합등재 시 탕춘대성의 명칭 정리가 필요하여 사적 지정 시 명칭이 정리되는 것에 의거 활용



都城圖(1720년대)
-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京兆五部·北漢山城附圖(1750년대)
- 서울대 규장각 소장

- 실록 등 문헌자료와 경조오부도·동여도·수선전도 등 일부 지도에 ‘서성(西城)’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서성’은 탕춘대에 축조된 성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상 표현되는 대로라면 향림봉에서 한북문 서쪽까지 축조된 성곽, 즉 오늘날 홍지문에서 비봉 구간의 성곽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음

■ ‘서성(西城)’이 표시된 지도



왼쪽 경조오부도(1861년, 성신여대박물관 소장)와 오른쪽 수선전도(1861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비변사등록 - 영조 30년(1754년) 9월 1일

摠戎廳啓曰, 蕩春西城, 自香林峯, 至漢北門西邊, 相距二千四百步, 體城女牆及內外補築等役, 昨年爲始, 今已完畢

- 연산군 시기 명명한 ‘탕춘대’라는 명칭이 부정적이었던 영조는 ‘연융대’로 개칭하였고 이는 실록과 비변사등록에 나타나 있으며 19세기 지도인 동국여도에도 남겨져 있음

■ 사료상 나타난 연융대의 기록

- 영조실록(영조 30년, 9월 2일)

“공자(孔子)가, ‘반드시 이름을 바른다.’ 하였는데, 탕춘대(蕩春臺)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미 경영(京營)을 설치하고는 때때로 나아가기도 하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을 다시 연융대(鍊戎臺)라고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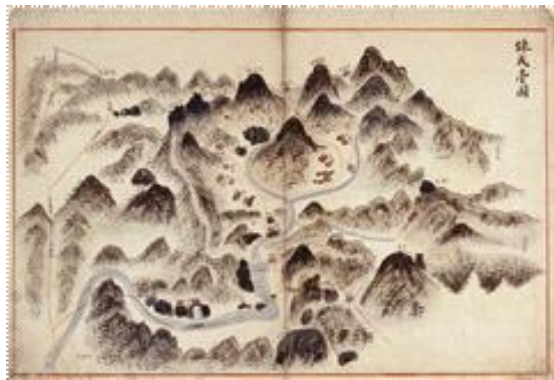
- 비변사등록 (영조 32년 2월 1일)

또 아뢰기를, “연용대(鍊戎臺)의 한북문(漢北門) 성역(城役)을 마치지 못한 곳은 이런 따듯한 봄을 만나 일을 계속 거행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평년과 다르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선 금년 추수를 보아 거행하라.” 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탕춘대성의 기록

- 경성부사 1권 pp.329~330.

41년(1715년)에 이르러 비봉 아래로부터 산을 내려와 조지동(造紙洞)의 계곡을 횡단하여 다시 산을 올라 인왕산 성벽 뒤 절벽에 이르는 성벽을 축조하였다. 이것이 곧 송시열이 제창한 ‘조지서(造紙署) 동구(洞口)를 막자던 성벽’이다. (중략)이 성채는 속칭 ‘西城’ 또는 ‘蕩春臺城’이라고 불리고 있다.



동국여도(19C, 서울대 규장각 소장) 중 도성연용북한합도(좌)와 연용대도(우)

- 문화재 지정명칭이 된 ‘탕춘대성’이라는 명칭은 일제시대 <경성부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도 속칭 ‘탕춘대성’으로 불렸다고 서술됨

이에 따라 상기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탕춘대성(蕩春臺城)(연용서성(鍊戎西城))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검 토 의 견 서

- 내 용 : 홍지문 및 탕춘대성(시 유형문화재 제33호) 사적 지정 관련, 명칭 검토
- 일 시 : 2023. 8. 29.(화) 15:00~
- 장 소 : 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
- 참석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 문헌 기록과 고지도에 등장하는 공식 명칭 (지명 등)을 감안할 때, 사적 지정 명칭은 "탕춘대성 (연봉서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됨.
- 지정 명칭 외에 사적 지정 보전에는 탕춘대성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3. 8. 29.(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탕춘대성(연융서성)은 인왕산과 북한산 향로봉 사이 산등성이에 석성과 토성 그리고 자연암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성 안쪽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사이 험준한 골짜기로 홍제천이 흐른다. 성 남쪽 한양도성과 북쪽 북한산성이 남북 성벽을 이루고 동쪽과 서북쪽 일부는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자연성벽을 이루어 침입 우려가 큰 서쪽에 쌓은 성만으로 하나의 성을 이룸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을 쌓고 그에 필요한 막대한 군량을 저장하기 위하여 1713년 탕춘대 일대에 평창을 짓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1715년부터 동구에 오간 수문과 문루 등을 쌓으며 시작되었으며 1718년에는 탕춘대 서쪽 성벽을 일부 쌓다가 중단함
- 1751년 영조는 전대와는 달리 변란에도 도성을 지키겠다는 《수성절목》을 반포하여 구체적 도성방어계획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로 북한산성과 경기 서남부 방어를 담당하는 충융청을 이곳에 옮기어 축성을 전담하도록 하여 1754년 탕춘대 서쪽 성을 불림
- 1754년 탕춘대를 연융대로 그 이름을 고쳤으나 유구한 이름이었으므로 꾸준히 ‘탕춘대성’으로도 불림
- 변란에 도성을 고수할 때는 서북쪽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평창에 비축한 군량을 공급하고, 변란에 임금이 도성민과 함께 북한산성에서 농성할 때는 북한산성 남서쪽을 방어하며 군량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
- 탕춘대성 주변 지정문화재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사적인 ‘서울 한양도성’과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석과정 별당’이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는 보물인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와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이 있고, 사적인 ‘북한산성’과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 서울특별시 기념물인 ‘세검정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석과정’, ‘안평대군 이용 집터’, ‘반계 윤웅렬 별장’, ‘평창동보현산신각’이 있음
- 비지정문화재로는 ‘조지서 터’, ‘충융청 터’, ‘평창 터’, ‘장의사 터’ 등이 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 후 평상시 군량을 보관할 평창을 방어하고 교통로 확보를 위해 1715년 탕춘대 동구에 수축한 성곽 유산을 지칭함
- 1718년에 성벽을 쌓다가 중단된 탕춘대성은 영조는 새로운 도성방어체계를 마련하여 충융청을 탕춘대성 내부로 옮겨 축성을 담당하도록 하여 1754년 탕춘대 서쪽 성곽을 완성하고 탕춘대를 연융대(鍊戎臺)라고 이름을 고침
- 탕춘대 서쪽 인왕산부터 북한산 향로봉에 이르는 구간 험준한 산마루를 따라 방어 설비가 필요한 곳에 자연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래의 산성 축조방식을 충실히 따라 석성과 토성을 쌓음

- 탕춘대성은 홍지문(한북문)과 오간수문, 익성을 설치하였고 암문도 1곳이 있으며 성벽에는 총안(銃眼)을 냄. 한양도성, 북한산성의 성벽과 잇닿아 있음. 성벽 한 면으로 성을 이루고, 3개의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체계를 갖춘 성은 국내에 유일
- 탕춘대성이 축조되면서 조정은 도성민과 함께 적으로부터 도성을 굳게 지키는 방어 체계로 확립되어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계가 완성됨

■ 탕춘대성 축성배경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위급 시 도성은 너무 넓어 방어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도성의 백성을 모두 옮겨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천험을 갖춘 북한(北漢)을 지목해 1711년(숙종 37) 4월~9월 산성을 수축하고,
- 다시 북한산성 방비를 위해 1712년(숙종 38)~1714년(숙종 40) 평창(平倉)을 창의문 밖에 설치하여 북한산성에 들이지 못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후 북한산성과 평창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탕춘대에 축성하였음
- 최초의 발의는 1702년(숙종 28년) 당시 우의정이던 신완(申玩)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년에 걸친 조정의 극심한 찬반 논쟁을 극복해가며 숙종과 이유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정조 때까지 지속됨

■ 축성 주체 및 진행경과 : 3단계로 구분 가능

- 1차 : 1713(숙종 39)~1715년(숙종 41)
→ 충융청이 주관하여 수문(水門), 좌성(左城)·우성(右城) 일부, 한북문, 도로 수축
- 2차 : 1718년(숙종 44) 윤8월 26일~동년 윤10월 초6일
→ 경리청이 주관하여 서성(西城) 2,400步 중 약 1/2 축조
1753년(영조 29)~1754년(영조 30)
→ 충융청이 주관하여 서성 축조 및 보수공사 완료
- 3차 : 1753년(영조 29)~1754년(영조 30)
→ 충융청 주관하에 한북문 동쪽 성곽 1400보 중 體城 50보와 女牆 축조
1797년(정조 21)
→ 충융청 주관하에 동쪽 성곽 축조 완료

■ 축성된 城의 성격 :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의 외성(外城)

『비변사등록(1718년 12월 20일)』에 보면 탕춘대 축성을 주도한 숙종의 발언(“만약 북한산성을 지킬 수 있다면 어찌 북한산성을 쌓겠는가? 도성은 실로 백성들과 함께 지킬 형편이 되지 못하여 수축하는 역사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또 탕춘대에 외성(外城)을 쌓으니 형세가 더 장엄해진다.”)과 같이 한양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북한산성의 외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탕춘대성 축성범위와 규모

『비변사등록(1754년 9월 1일)』에 따르면 탕춘 서성(西城)은 향림봉(香林峰:비봉 추정)에서 한북문(漢北門) 서쪽까지 2,400步이고, 동쪽은 한북문에서 인왕산 도성 아래까지 1,400步에 이른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비봉에서 인왕산 도성과 연결되는 곳까지를 탕춘대 축성범위라고 할 수 있고, 총 3,800步임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후기 도성방위체계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의 연계

- 탕춘대성은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의 방위성으로 1715년에 시작하여 1754년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을 지켜 조정의 권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한양도성을 수축하고, 북한산성을 새로 쌓은 후 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축조하여 세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평창의 설치와 군량저장 시설

-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하는 배후 성이다.
- 1713년 창고를 짓기 시작하여 1714년에 50여 칸의 상창(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이 완성되었는데, 선혜청의 창고도 만들었다. 이후 상창과 중창은 경리청의 창고로 합쳐서 평창이라고 했으며, 하창이 선혜청 창고로 탕춘대성 안쪽인 오늘날 평창동에 있었다. 영조 때에는 오늘날 세검정초등학교에 있었던 충융청과 세검정 사이에 신영창 31문을 세워 상평창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창고였다. 이곳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이나 북한산성에 공급하였다.



《동국여도》 연용대도의 각 창고

○ 충융청의 이설과 군사적 중요성의 증가

- 영조는 탕춘대성을 완성하여 도성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포하였는데 그래야만 민심이 안정되어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위민의 큰 뜻이었다. 그리하여 1747년에 탕춘대성으로 충융청을 옮기고 북한산성과 경기서남부까지 지휘하도록 하였다.

○ 주변 유적과의 관계로 본 탕춘대성(연유서성)의 가치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연결하여 도성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며 성 내부에는 세검정터, 충유청 터, 평창 터와 같은 조선 후기 국방 관련 유적이 있어 탕춘대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한다.



개화기의 충유청 모습(이폴리트 프랑델 공사)

○ 탕춘대성(연유서성)의 사적으로서 가치

- 탕춘대성은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의 방위성으로 1715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1754년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을 지켜 조정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한양도성을 수축하고, 북한산성을 새로 쌓은 후 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축조하여 세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서북쪽을 방어하는 성곽일 뿐만 아니라 성안에 충유청이 설치되어 북한산성을 지휘하고 경기 서남부를 관할하는 지휘소가 갖추어진 성이었다.
- 탕춘대성은 성안에 설치한 평창(平倉) 등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군량 기지 역할을 하였다. 숙종 때에는 험준한 북한산성에 도성민이 몇 달을 버틸 군량을 비축하기 어려워 평창을 만들어 비축했다가 전시에는 북한산성에 올리도록 설계되었지만, 영조 때는 경창(京倉), 호조·선혜청 창고의 곡식까지 이곳으로 옮기면서 도성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접한 성곽의 군량을 보급하고 지휘까지 하는 배후 성이다.
- 탕춘대성은 남쪽 한양도성과 북쪽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조정과 도성민이

한양도성을 고수하다가 지키기 어려워지면 탕춘대성을 지나 북한산성의 대남문과 대성문을 통해 들어가 조정과 도성민이 지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변란에 어가(御駕)가 숙정문을 지나 북한산성 대성문을 통해 행궁으로 들어가도록 탕춘대성 동쪽 대성문로(大成門路)가 있었다.

- 탕춘대성 완성을 영조 스스로 위민(爲民)의 뜻이었다고 밝혔고, 정조 역시 영조께서는 ‘수성(守城)’ 두 글자를 방어와 공격의 제일 조건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그 의미가 너무도 명확하다.
- 탕춘대성의 원형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는 조선 후기 축성술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22년 ‘탕춘대성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역사적,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홍지문에서 향로봉과 비봉으로 이어지는 북한산 지맥에 조성된 체성부는 성 내외가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성벽은 고쳐 쌓은 한양도성의 숙종대 구간이나 신축한 북한산성과 동일한 축성법을 보인다. 적이 침입하기 쉬운 완만한 곳은 성벽을 높이 쌓고 총안(銃眼)을 설치하였으나 험준하여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것은 성벽이 비교적 낮고 총안이 설치되지 않았다. 성벽은 성돌의 크기와 다듬은 정도를 통해 숙종 때 쌓은 부분과 영조 때 고쳐 쌓은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영조 때는 주변의 비교적 작은 자연석을 주워서 쌓았다. 대단히 험준한 인왕산 구간 일부는 토성을 쌓았는데, 성벽 기초에 서너 줄 석렬(石列)을 두르며 쌓아 성벽의 무너짐을 막으려 하였다.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연결하여 도성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며 성 내부에는 세검정 터, 충유정 터, 평창 터와 같은 조선 후기 국방 관련 유적이 있어 탕춘대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한다.
- 따라서 탕춘대성은 18세기 이후 확립된 도성방어체계의 완성체이며 동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관문(關門)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동시가 국내외에서 볼 수 없는 사례이므로 국가 사적으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하나로 연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본 사적 승격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 37필지 11,06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42-1	임야	1,888,095	14		
2	구기동	산3-1	임야	1,942,007	439		
3	구기동	산3-23	임야	219,174	1,286		
4	구기동	산3-24	임야	30,149	615		
5	구기동	산10	임야	20,826	234		
6	홍은동	산1-45	임야	77,966	10		
7	홍은동	산1-71	임야	85,497	58		
8	홍은동	산1-134	임야	17,623	8		
9	홍은동	산1-135	임야	21,058	49		
10	홍은동	산1-191	임야	5,851	194		
11	홍은동	산1-193	임야	661	34		
12	홍제동	산 1-1	임야	615,785	427		
13	홍제동	산1-100	임야	161,354	108		
14	홍제동	2	도로	129	129		
15	홍제동	3-1	도로	2,087	47		
16	홍제동	3-2	하천	5,403	6		
17	홍제동	4-4	임야	2,980	152		
18	홍지동	산1	임야	893	1		
19	홍지동	산2-2	임야	4,701	1,016		
20	홍지동	산4	임야	23,688	434		
21	홍지동	7-1	학교	85,256	88		
22	홍지동	11-2	전	2,347	17		
23	홍지동	30-1	전	9,200	25		
24	홍지동	31-7	대지	3,062	167		
25	홍지동	33-9	대지	14,876	33		
26	홍지동	33-11	잡종	2,426	13		
27	홍지동	36-9	대지	1,435	14		
28	홍지동	36-10	대지	1,464	11		
29	홍지동	99-7	도로	17,944	148		
30	홍지동	134-7	도로	620	10		
31	홍지동	136-3	하천	1,220	187		
32	부암동	산15-1	임야	11,405	327		
33	부암동	산15-3	임야	3,769	256		
34	부암동	산16-1	임야	34,551	173		
35	부암동	산17-1	임야	31,329	1,058		
36	부암동	산17-3	임야	1,458	1,265		
37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	2,012		
계	37필지			5,489,016	11,065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 68필지 204,962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42-1	임야	1,888,095	3,112		
2	구기동	산3-1	임야	1,942,007	14,309		
3	구기동	산3-23	임야	219,174	44,495		
4	구기동	산3-24	임야	30,149	13,631		
5	구기동	산10	임야	20,826	5,134		
6	구기동	262-2	대지	536	201		
7	구기동	263-5	구거	101	15		
8	홍은동	산1-45	임야	77,966	2,620		
9	홍은동	산1-70	임야	11,901	10,758		
10	홍은동	산1-71	임야	85,497	6,280		
11	홍은동	산1-134	임야	17,623	899		
12	홍은동	산1-135	임야	21,058	1,886		
13	홍은동	산1-191	임야	5,851	3,571		
14	홍은동	산1-193	임야	661	621		
15	홍은동	산1-194	임야	959	47		
16	홍은동	1-1	대지	139	139		
17	홍은동	1-2	대지	225	225		
18	홍은동	1-3	하천	840	418		
19	홍은동	2-1	대지	99	99		
20	홍은동	2-2	대지	50	50		
21	홍은동	2-3	대지	20	20		
22	홍은동	2-8	대지	76	6		
23	홍제동	산 1-1	임야	615,785	12,023		
24	홍제동	산1-100	임야	161,354	202		
25	홍제동	1-1	대지	129	129		
26	홍제동	1-2	대지	86	86		
27	홍제동	1-3	대지	56	56		
28	홍제동	3-1	도로	2,087	321		
29	홍제동	3-2	하천	5,403	701		
30	홍제동	4-4	임야	2,980	199		
31	홍지동	산1	임야	893	427		
32	홍지동	산2-1	임야	1,944	642		
33	홍지동	산2-2	임야	4,701	3,685		
34	홍지동	산4	임야	23,688	8,931		
35	홍지동	7-1	학교	85,256	3,867		
36	홍지동	11-2	전	2,347	962		
37	홍지동	30-1	전	9,200	1,874		
38	홍지동	31-7	대지	3,062	2,083		
39	홍지동	31-11	전	1,296	490		
40	홍지동	31-20	대지	1,200	3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41	홍지동	33-1	전	1,993	277		
42	홍지동	33-2	전	3	3		
43	홍지동	33-9	대지	14,876	4,274		
44	홍지동	33-11	잡종	2,426	1,904		
45	홍지동	36-9	대지	1,435	668		
46	홍지동	36-10	대지	1,464	811		
47	홍지동	36-11	대지	109	78		
48	홍지동	36-16	도로	703	193		
49	홍지동	36-21	대지	489	410		
50	홍지동	36-22	대지	473	226		
51	홍지동	36-32	대지	526	263		
52	홍지동	36-40	도로	69	44		
53	홍지동	36-41	대지	522	418		
54	홍지동	72-7	하천	9,023	49		
55	홍지동	99-7	도로	17,944	483		
56	홍지동	134-7	도로	620	252		
57	홍지동	136-3	하천	1,220	729		
58	부암동	산15-1	임야	11,405	2,089		
59	부암동	산15-3	임야	3,769	2,300		
60	부암동	산16-1	임야	34,551	2,048		
61	부암동	산17-1	임야	31,329	12,464		
62	부암동	산17-3	임야	1,458	193		
63	부암동	산17-4	임야	5,570	349		
64	부암동	산20	임야	18,050	961		
65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	27,166		
66	부암동	산22-3	임야	6,545	387		
67	부암동	369-40	임야	516	271		
68	부암동	391	잡종	13,845	47		
계	68필지			5,566,980	204,96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

○ 주요시설

- 성 광 : 인왕산 서울성곽 하부~향로봉 하부

- 성벽은 총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로 조사되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204,962㎡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문화재 면적인 198,657㎡에서 6,305㎡가 늘어났다.

- 성 문 : 성벽과 함께 1715년 축조를 시작 1754년에 건립이 완료되었다.

- 홍지문 : 탕춘대성의 정문으로 1921년 홍수로 무너진 후 1977년 복원되었다.
- 오간수문 : 홍제천에 있는 수문으로 홍지문과 함께 복원되었다.
- 암문 : 북한산에 있는 암문으로 축조 당시 모습이 남아 있다.

■ 탕춘대성 고지도



《도성대지도》의 한북문과 충융청



《수선전도》의 서성, 한북문, 충융청, 평창, 조지서



《동여도》도성도의 서성, 한북문, 암문, 충영(摠營)



《한양전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대동여지도》 도성도의 서성, 한북문, 암문, 충영(摠營), 평창



《한양경성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조선성시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충융청



《천하산천도》 한양도의 성과 수문(水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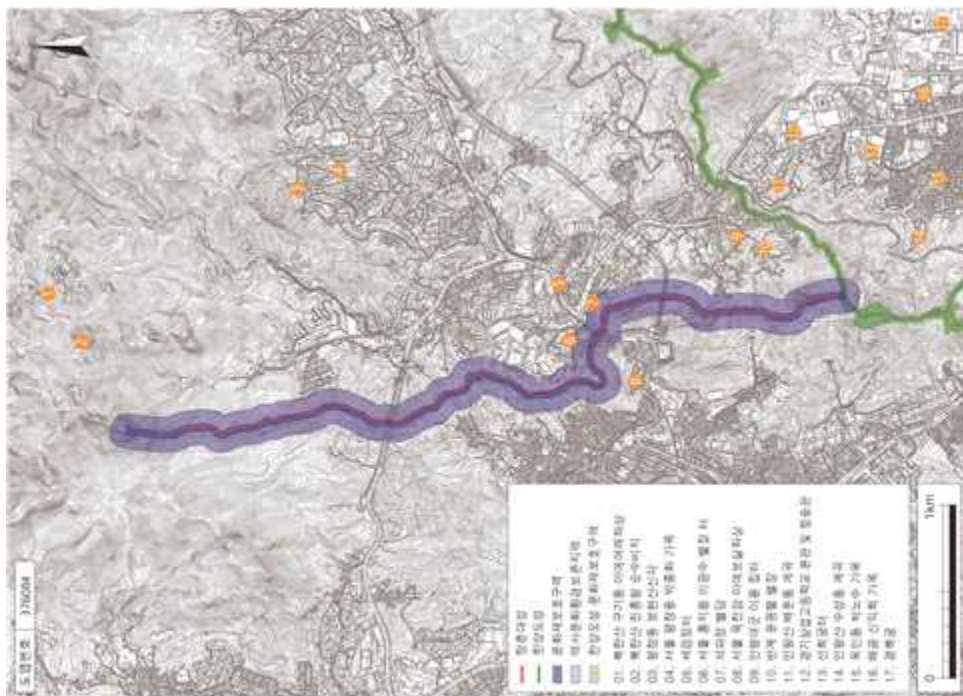


《해동지도》 경도의 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관계도



《해동지도》 경도의 탕춘대성(수문, 탕춘대, 선해창, 조지서, 경리상창, 경리하창)

■ 각 구역별 탕춘대성 사진





탕춘대성 주변 현황(북한산성 연결 구간)



한양도성 연결부



인왕산 토성(1구역)



인왕산 기차바위 구간



인왕산 토성구간(2구역)



인왕산 토성구간(3구역)



인왕산 암반 성벽(3구역)



인왕산 토성구간(4구역)



인왕산 토성구간(4구역)



인왕산 암벽209구간(4구역)



홍지문~인왕산 성벽 (4구역)



인왕산에서 본 상명대 쪽 성벽 (5구역)



인왕산에서 본 상명대 쪽 성벽 (5구역)



인왕산 쪽 성벽과 충안(6구역)



인왕산 쪽 익성 복원구간



인왕산 안내도



홍지문



홍지문과 오간수문



오간수문 북쪽 익성



상명대 쪽 익성 복원 구간



탕춘대성 성돌



무너진 성벽(8구역)



성벽(8구역)



성벽(9구역)



성벽(9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암문(내부)



암문(외부)



성벽(11구역)



성벽(11구역)



향로봉 하단까지 축조된 성벽



향로봉에서 본 남측 성벽 현황



홍지문(한북문) 전경



홍지문(한북문) 등성 계단



내부 홍예



외부 홍예중석



여장



여장 충안



누조



누조 측면



홍지문 육축 외부 문짝



홍지문 내부 통로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정밀실측에 따른 구역의 확정과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허용기준 또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1) 문화재보호구역

- 2023년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정용역 결과 탕춘대성의 정확한 길이와 성벽 중심선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졌던 문화재 길이와 면적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 이번 신청대상인 탕춘대성(연용서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성벽 중심선으로부터 내·외 20m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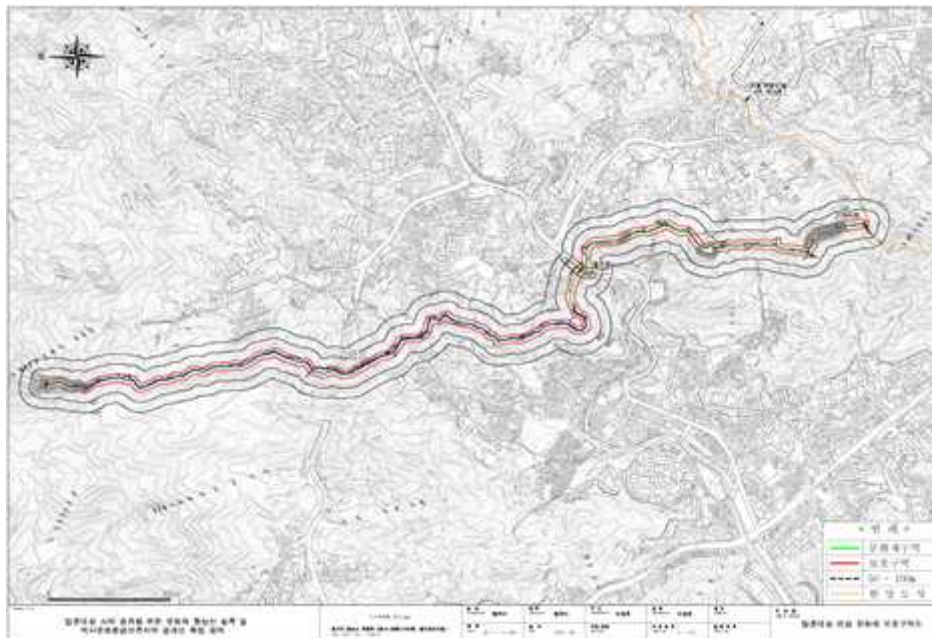
홍지문 및 탕춘대성 문화재보호구역 설정도

- 성벽은 총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로 조사되었다.
- 2023년 탕춘대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정 용역'에서 산출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204,962㎡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보호구역 면적인 198,657㎡에서 6,305㎡가 늘어났다.

	변경 전	변경 후
성벽 길이	4,882m	5,051m
보호구역 면적	198,657㎡	204,962㎡



탕춘대성 당초 문화재보호구역도



탕춘대성 변경 문화재보호구역도



홍지문 남쪽 실측 성곽선과 불일치

- 정밀실측에 따라 북한산 성벽 종료 지점 북측은 향로봉 암반구간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지정구역에 편입하였다.
- 인왕산구간은 석성·토성·암반 구간으로 구분된다. 현재 석성구간은 시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토성과 암반구간의 일부가 문화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2023년 정밀실측에 근거하여 조정이 필요하였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 홍지문 및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서 당초 보호구역 주변 50m 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나 **서울시 문화재조례 제19조제1항2호**에 근거, 10,000㎡ 이상인 경우 설정하지 않는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적 대부분은 산지 지형으로 역사문화경관이 저해되는 경우는 없으나, 홍지문 인근 사유지 일부가 탕춘대성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함에 따라 유적 보존 및 경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 사적 지정 이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
 - 현재 홍지문 북측 북한산구간의 성 내·외측 사유지 일부는 성벽에 인접해 건축물이 위치한다. 이 때문에 성 내측의 지형변화 및 유적 훼손은 물론, 유적 조망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성벽에 인접한 사유지는 매입하고, 유적 정비 및 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홍지문 및 탕춘대성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이나 ‘탕춘대성(연용서성)’이 국가사적으로 승격 시 보호구역 주변 1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한다.

(3) 불부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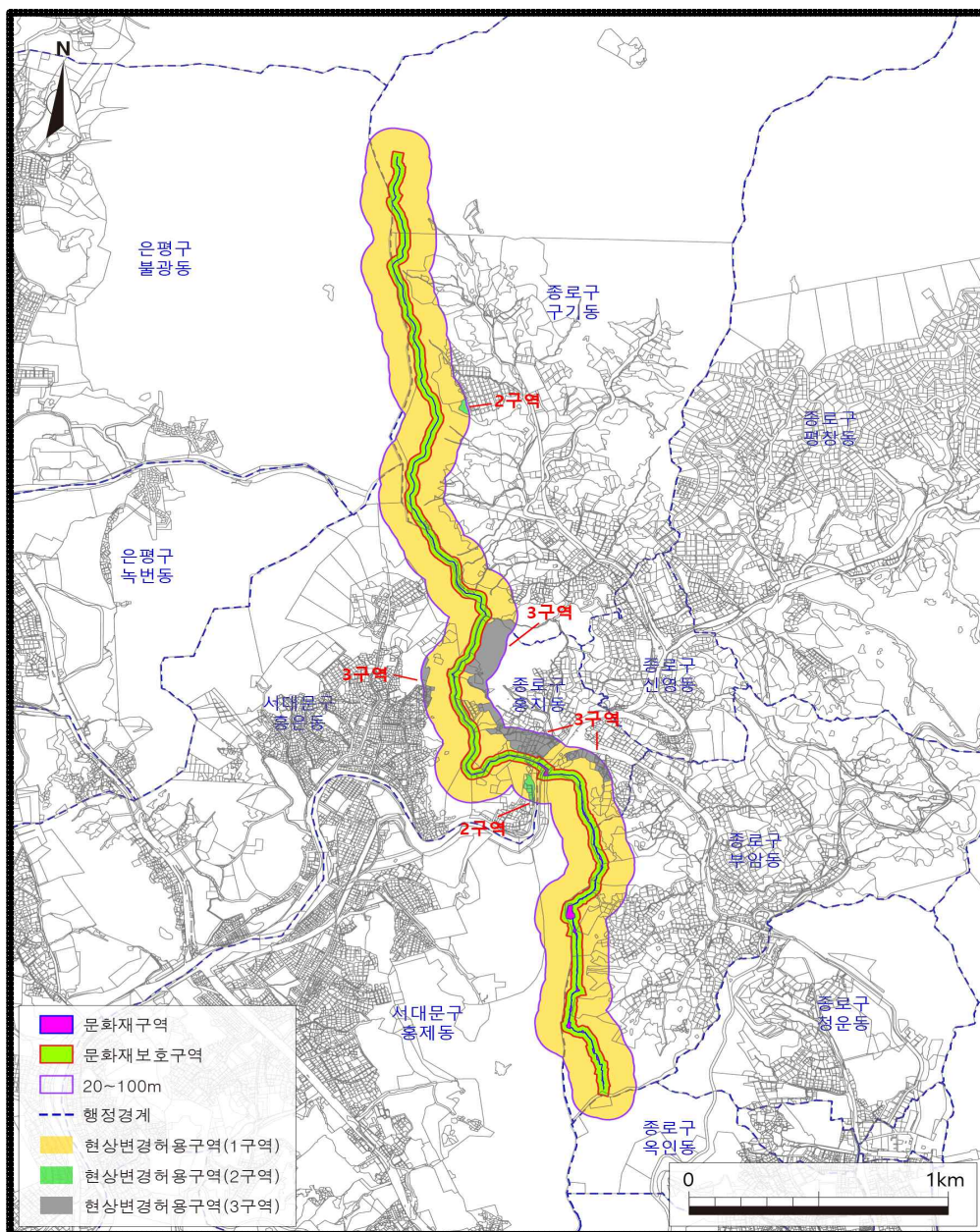
- 탕춘대성은 종로구와 서대문구, 은평구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 지적측량의 오류로 말미암은 불부합지가 발생했다. 이는 보존·관리 시 행정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2023년 실측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자치구 간 지적 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시

- 사적 지정 후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변 100m 범위 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에서 사적 승격 시 신설되는 역사문화환경지역은 홍지문이 위치하는 홍지동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시설물이 위치하는 곳은 거의 없으므로, 산지 및 임야는 보존지역으로 설정한다.
-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설정된 북한산 지역의 임야의 경우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 기 개발된 사유지는 3구역으로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에 따라 재개발 및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허용기준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 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탕춘대성 허용기준(안)



탕춘대성 허용기준(안)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8-1. 기초 정비계획

1) 수목 정비

(1) 기본 방향

- 탕춘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수목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탕춘대성은 인왕산과 북한산에 걸쳐 있는 성곽으로 기존 식생의 생태적 가치와 서울 한양도성 및 내사산, 외사산의 역사성을 보전한다.
 - 훼손된 산림은 역사·문화적 고증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생태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계획을 도모한다.
 - 북한산구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상 보전을 위한 행위허가에 따라 수목 정비 시 허가가 필요하다.
 - 식생제거는 경관적으로 주요한 지점이나 생태성이 열악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성곽유구 조사연구 및 정비, 탐방로 개설 및 정비 등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 성곽의 시·발굴 또는 성곽 수리 및 정비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식생제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이때 식생에 대한 생태적 배려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한 식생제거는 문화재와 인접한 숲을 제거하게 되므로 유적 내외부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성곽유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식생제거가 일정범위 이루어지면 사업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침식에 대비해야 하며 교목 하부의 식생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관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식생의 천이를 차단하게 되므로 숲의 다음 세대를 구성하게 될 어린 개체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수목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및 입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정 수종을 선정한다.
 - 성벽에 영향을 끼치는 수목이나 성벽 면석 및 상부에서 자라나는 수목에 대해서는 성벽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고, 담쟁이덩굴과 같은 덩굴식물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수목 특성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조사연구를 위한 식생제거**
 - 제거가 불가피한 지역 외의 식생은 최대한 보호
 - 발굴지역에 잔존시킨 수목은 향후 유적 지역의 생태적 기반이 되는 점에 유의
- **유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식생정비**
 - 성곽유구 상부나 면석 사이에서 자라는 수목은 지속적 제거
 - 수목의 도괴로 성곽유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탐방로 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식생정비**
 - 현재 대상지 내 탐방로 주변에 생육하는 외래종 수목의 지속적인 제거

- 쓰러진 수목이나 떨어지는 가지에 의해 탐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안전한 보행, 여름철 그늘 제공 등 쾌적한 탐방 여건 조성을 위한 식생정비

● 조망을 위한 식생정비

- 조망을 위한 식생정비는 조사연구, 성곽보수·복원 등의 사업과 연관을 검토하여 시행
- 여건에 따라 가지치기만으로 외부로의 가시성 증대가 가능함에 유의

●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숲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 정기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하는 지역에서는 자생종 수목의 치수를 보호·육성
- 외래수종의 침입을 배제해주면서 자연스러운 천이가 진행되도록 관리

● 외래수종으로 구성된 숲 또는 산발적으로 출현하는 외래수종 수목의 정비

- 외래수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단계적 간벌로 갱신유도
- 외래수종 제거로 발생한 산물은 가급적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내에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부식시킴
- 맹아력이 왕성한 수종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화학적 고살처리 시행

(2) 성벽 형태별 수목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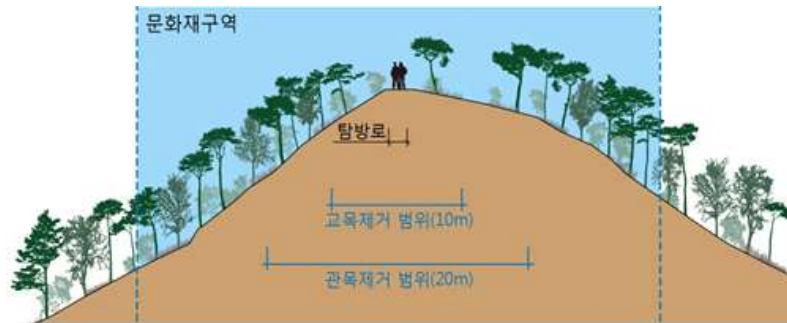
① 토성구간

- 석성 구간을 제외한 1,502m 중 암반구간(744m)을 뺀 구간으로 총 758m이다.
- 암반 구간을 제외한 능선 구간에 토성이 축조되었으며, 성 상부는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사유실 등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 암반 구간의 수목은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외부에서의 조망상 필요하다면 수목조사를 통해 검토 후 정비하도록 한다.



토성구간 탐방로와 수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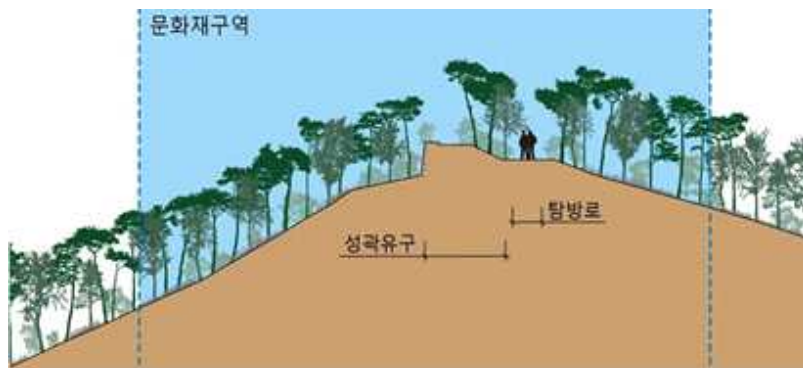
- 교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과 성 상부(탐방로)에서 생육하는 수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 상부를 중심으로 내·외측 10m에 해당한다.
- 관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과 참나무류의 치수(穉樹)로, 정비 범위는 성 상부를 중심으로 내·외측 20m 범위이다. 이 범위에 식생하는 관목성 자생수종인 진달래, 산철쭉, 누리장나무 등은 존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 토성구간의 수목제거는 과도할 경우 경관을 해칠 수 있고 지형침식을 가속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식생조사를 통해 적절한 구체적 제거범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토성구간 수목정비 범위와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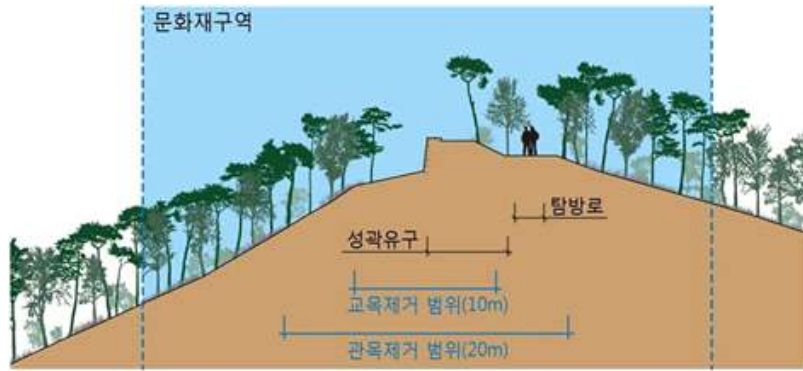
② 석성구간

- 석성 구간은 인왕산구간과 북한산구간까지 총 3,549m에 해당한다.
- 석성 구간 또한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 내측으로는 일부가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 탐방로는 대부분 1~2m 정도의 폭으로 형성되어 통행에 불편함은 없으나 침식이 심각한 구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 석성구간의 수목은 성벽에 근접하여 다수 생육하고 있으며, 일부 성 상부에 수목이 생육 중이다.



석성구간 유구와 수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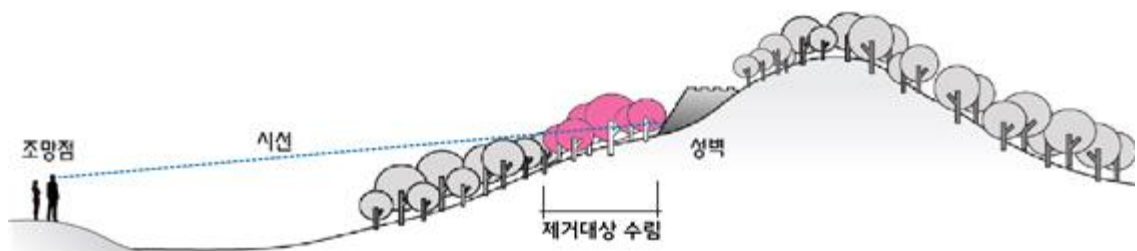
- 교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 및 성벽 인접하여 자라는 수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벽을 포함해 내·외측 10m 범위에 해당한다.
- 관목제거 대상 수종은 덩굴류 및 교목류, 맹아와 관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벽을 포함해 내·외측 20m 범위이다. 관목제거 시 관목성 자생수목인 진달래, 산철쭉 등은 존치하도록 하여 표토층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원된 석성구간의 현황 사진을 보면 덩굴식물로 인해 어디가 성벽인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제거범위를 고려하여 성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덩굴식물을 제거한다.
- 성 상부에 생육하는 수목과 성벽에 근접하여 생육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일정 범위 내에는 외래수종인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을 선별하여 제거한다.



석성구간 수목제거 범위

(3) 성벽 조망을 위한 수목정비

- 탕춘대성 전 구간을 가시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면 토성구간의 경우 가시가 가능해져도 성곽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그 외의 석성구간들은 모두 시가지에서 외부 조망점들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도로변 건물과 가로수의 영향으로 보행자에게 의미 있는 성곽 조망가능 지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정비 시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수목 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 석성구간이 명백하게 가시(可視) 가능한 지점은 홍지문 근처에서만 나타나는데 홍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산구간과 인왕산구간 일부가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구간은 25~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모두 도로나 주택지역과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벽의 가시를 가능케 하는 수목제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왕산구간과 북한산구간의 성벽의 가시가 가능한 임의의 지점을 선정한 후 수치지형도에서 시선에 대한 횡단선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성곽 가시성 확보를 위한 식생제거 범위 설정의 개념



조망점 위치 및 수목제거 범위

① 조망1지점 : 북한산구간 조망

- 홍지문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복원구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위치상 홍지문 앞이다.
- 수목정비구간(20m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조망되는 경사각에 따라 성벽에서 36~50m의 제거 범위(제거면적 2,465m²) 검토

② 조망2지점 : 인왕산구간 조망

- 홍지문에서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복원구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위치상 홍제천변 노상주차장이다.
- 조망되는 경사각에 따라 성벽에서 34~97m의 제거 범위(제거면적 2,212m²)를 검토

조망점 위치	시선	거리(조망점-성벽)	수림제거폭	비고
조망1지점 : 홍지문 앞 (북한산구간)	1	148m	32m	제거면적 : 약 2,212m ²
	2	159m	43m	
	3	184m	79m	
	4	201m	97m	
	5	214m	성벽조망 불가	
	6	225m	성벽조망 불가	
조망2지점 : 홍제천변 노상주차장 (인왕산구간)	1	100m	42m	제거면적 : 약 2,465m ²
	2	132m	45m	
	3	164m	50m	
	4	173m	3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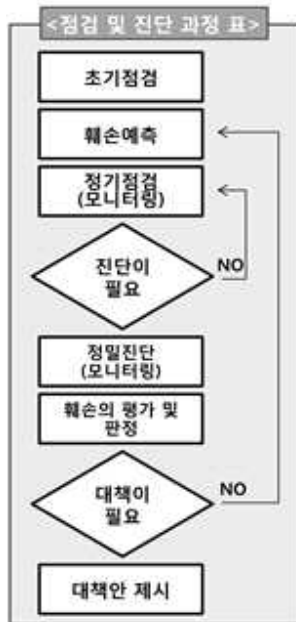
조망 위치에 따른 수림제거폭

→ 조망을 위한 수목 제거 시 성벽의 가시성이 증가하는 효과에 비해 제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침식이나 경관변화를 감안한다면, 교목제거 10m, 관목제거 20m의 범위를 설정하여 제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배수시설 정비

(1) 기본 방향

- 당춘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배수시설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수구 존재 시 성곽 보존에 문제가 없다면 본래 수구의 기능을 회복하여 배수로 정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의 안전점검을 통해 성벽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에 대해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한다.
 - 우수에 의해 형성된 자연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최대 예상 강우량을 토대로 배수로 규모를 결정한다.
 - 배수로는 탐방로 내측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불가할 경우 여장 쪽으로 설치하되 여장 및 성곽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 배수로의 구성 재료로 성돌과 유사한 석재를 이용하는 등 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위적이지 않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정비 후에도 정기적인 계측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한양도성 안전진단 및 계측 사례



점검 및 진단 과정표 및 서울 한양도성 안전진단 및 계측 사례

(2) 성벽 인접 시설물의 유입수 차단

- 성벽 인접 시설물로 인한 인위적인 유입수 차단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현장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된 상명여고 인접 구간으로 이미 성벽 내부로 우천 시 우수가 침투하여 배부름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 단면도를 확인하면 상명여고 경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 외부인 성 상부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조성한 상태로 성 상부의 우수가 모두 한 지점으로 몰려 쏟아지게 되어 성벽은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하부에는 급격한 우수 낙하로 토사가 유실되어 있었다.

- 현재 토사 유실로 인해 탐방로 토사까지 유실되어 임시방편으로 나뭇가지와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탐방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중이다. 탐방객들이 실족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배부른 성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탐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성 내측 우수 유입으로 인해 탐방로 토사유실

◀ 현재 토사유실의 대처로 나뭇가지와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탐방로로 사용



상명여고 유입수에 의한 토사유실 현황과 성벽배부름 입면도

- 성 내측 우수 유입을 차단하고자 안전 펜스 아래 측구(側溝)를 설치하여 학교 부지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성벽에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 상명여고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 성 내측(상명여고)에서 성벽을 타고 흐르는 우수를 성 내부에 측구를 설치하여 성 내측으로 배수하는 것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 성 내측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벽 뒤채움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기타 시설물 정비

(1) 군사시설

- 군사적 요충지였던 인왕산과 북한산에 걸친 탕춘대성은 현재에도 군사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군사시설은 성 내측에 성벽에 인접하여 있다.
- 군사시설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과 참호 등으로 지형을 훼손하며 입지했다.



인왕산 구간 군사시설



인왕산 구간 군사시설 출입문

- 성 상부에 철조망 설치로 인해 유적이 훼손되고 경관을 저해하며 특히 탐방객들의 안전상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생태계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는 철조망은 철거를 진행하도록 한다.
- 철책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성 상부에 시멘트와 앵커볼트(기초볼트)를 설치한 흔적이 있어 성벽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도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와 앵커볼트를 제거하여 원형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인왕산구간의 토성 상부에도 군사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성벽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토성구간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북한산구간에는 대규모 군사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간단한 시설 철거 및 훼손된 지형의 복원계획을 진행하고, 인왕산구간에는 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군부대 협의 후 정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8-2. 유적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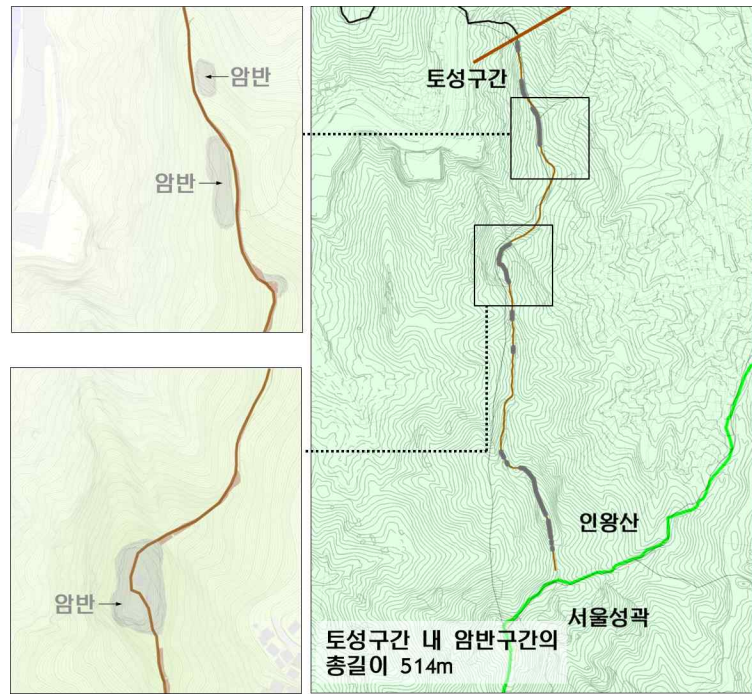
1) 기본 방향

- Tangun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유적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Tangun대성은 크게 잔존 유형별로 원형구간, 복원구간, 멸실구간, 암반구간으로 구분한다.
 - 원형구간에 대해서는 토성과 석성 구간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존 정비를 실시한다.
 - 복원구간은 홍지문 및 오간수문의 좌측으로 150m, 우측으로 50m 총 200m의 구간으로 1976년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보수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여장 원형의 모습을 무시한 채 복원되어 원형 회복이 필요하다.
 - 멸실구간은 도로에 의해 단절된 구간과 일부 탐방로 등에 의해 멸실된 구간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유구를 확인하고 성벽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2) 보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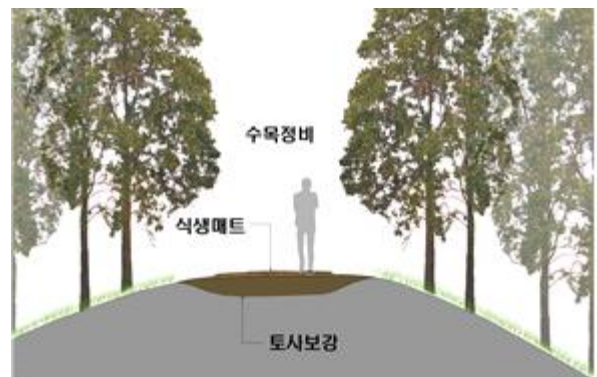
(1) 토성구간 상부 토사유실 정비

- 인왕산 토성구간 중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성벽의 규모 및 성격을 확인한 구간과 탐방로 및 우수로 토성 상부 토사가 유실된 구간은 정비를 실시한다.
- 현재 토성구간의 대부분은 성 상부에 토사가 유실되어 수목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토양에 중요한 표토층 및 유기물층 등이 모두 깎여나가 토양이 황폐해져 주변 식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 수목조사를 통해 성벽 상부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간벌을 통해 수목을 정비하도록 한다.
- 매장문화재 조사 이후 원지형대로 복원하고 상부에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성구간 내 암반구간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성벽 형태로 토성 정비계획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옆의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암반구간의 총길이는 514m로 토성구간 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토성의 최상부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움푹하게 패여 있고 수목의 드러난 뿌리를 밟으며 탐방하는 상태로 수목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해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토성구간 내 암반 구간

- 탐방로와 우수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어 움푹 파인 성 상부에 토사를 보강하여 메우면서 지반다짐을 한 후 연속적인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성 상부에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식생매트(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안전한 탐방로 조성과 함께 우수로 인한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 토사를 보강함으로써 토성의 원지형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상부에 식생매트를 깔아 설치하면 우천 시 흘러 내리는 우수가 움푹 파인 탐방로가 아닌 주변으로 고루 흘러내려 급격한 토사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탐방객들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로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연 친화적인 식생매트(야자매트)는 천연재료이므로 약 7년 정도 사용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부식되어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므로 7년 후에 한 번 더 성 상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시공하거나 당시에 새로운 자연 친화적 재료를 고려하도록 한다.



토성구간 단면 계획도

(2) 석성 구간 뒤풀음부 유실

- 상명대 인근 석성 구간으로 탐방객들이 다니면서 조성된 탐방로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砂防事業)¹⁾으로 인해 성곽 뒤풀음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구간의 사방사업은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산지 사면에 자연친화적인 석재를 사용하여 단을 조성하고 상부 황폐지에 사계절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철나무, 기타 관목 등을 식재하여 토사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공사한 상태인데 이번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에 대지 조성 시 훼손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구간 내에 성벽의 뒤풀음부가 유실된 상태로 뒤풀음 석렬까지 노출된 곳이 있다.
- 상명대 구간에서 향로봉으로 오르는 구간에서는 탐방객들의 통행으로 뒤풀음부가 훼손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흙이 유실되고 약 2m 폭으로 생긴 탐방로 가운데 성벽 뒤풀음 석렬로 보이는 석렬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로 지속적인 탐방과 우수로 인한 토사유실이 계속된다면 뒤풀음부의 석렬 또한 탈락되어 유실될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성곽의 뒤풀음부가 유실됨에 따라 성벽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구조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탐방객들을 위한 안전한 탐방로도 확보되어야 한다.
- 유실된 뒤풀음부에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성벽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안에 토사를 보충하여 기반을 다져 성벽의 구조적 안정을 되찾는다. 상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추가적인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 사방사업 구간 내 성벽은 안전점검을 통해 뒤풀음부의 표토층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이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성곽 내측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식생매트를 탐방로로 활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우수와 탐방객으로 인한 토사유실을 예방하고 더불어 탐방객들에게 통행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3) 복원 정비

- 1977년에 이루어진 탕춘대성 성벽 복원공사 당시 홍지문 및 오간수문, 성벽에 대한 원형고증은 이루어졌으나, 여장은 원형을 무시한 채 복원하여 당시의 복원구간 내 여장에 대한 원형고증과 복원정비가 필요하다.
- 홍지문 및 오간수문 양측으로 복원된 성벽은 탕춘대성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주요한 경관 조망부로 탕춘대성의 유적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현재 성돌 쪼개짐과 같이 훼손되고 원형과 다른 모습을 유지하기 보다는 면밀한 원형고증을 통해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 탐방객 및 주변 지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왕산과 북한산구간의 복원된 여장을 보면 복원공사 이후 진행된 보수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된다. 성돌 사이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매워 보수한 형

1) '사방사업(砂防事業)'이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황폐지에 식물을 심어 산림환경으로 복원시켜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성벽의 구조상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버티는 격으로 이를 제거하고 원래 형태의 여장으로 수리 및 복원 검토가 필요하다.

- 보수·복원 정비를 통해 훼손된 체성부 및 여장구간의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원형고증을 통한 복원 정비까지 진행한다.
- 복원구간의 체성부 성돌은 육안조사 결과 성벽의 본래 성돌인 구재와 외부에서 반입한 신재 2종으로 대비된다. 성돌의 균열은 북한산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신재보다 구재로 보이는 성돌에서 균열을 볼 수 있었다.
- 일단 단기적으로 안전점검 시 균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차적으로는 균열의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인지 재료적인 원인인지에 대해 규명하고 신재와 구재가 섞여 복원된 성벽으로 각 부재의 하중 및 압축강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 인왕산구간의 복원성벽 주변에서는 복원 당시 사용되었던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석재에 대해서는 원형의 성돌 여부에 대해서 분석 후, 원부재의 경우 추후 성곽 보수 및 복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복원구간의 형태를 단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이후 성벽 구조를 파악하여 원형고증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장의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4) 형상화 정비

(1) 성벽 위치 형상화

- 탕춘대성은 대부분이 능선 위에 위치하여 멸실된 구간이 적은 편이나 홍지문 남측 성벽이 현재 왕복 4차선 도로인 세검정로에 의해 멸실된 상태이다. 이 지점은 성곽이 외측으로 회절하는 구간으로 홍지문과 복원성벽의 방향이 다른 채로 끊겨있어 탐방객이나 지역민들이 쉽게 성곽의 연속성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탕춘대성 멸실구간 옛 모습



도로로 인한 멸실구간

- 옛 성곽의 흔적을 알리고 성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 이전에 현재의 홍지문 남측 성벽 멸실구간인 도로상에 성벽이 지나갔던 자리를 추정하여 표시(하부 형상화)한다. 이전된 홍지문의 원위치까지 표시할 것인지 성벽의 흔적만을 표시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벽 단면 형상화



성벽단절구간 복원형상화 사례(송례문)



등산로로 인한 성벽 단절구간 위치

- 북한산구간 상명대 부근에서 성벽의 단절구간 중 단면이 확연히 드러난 구간이 확인되었다. 단절구간에는 상명대학교 측에서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단절된 형태를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행의 편리성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 멸실된 구간은 현재 등산로의 양측에 성벽의 면석과 뒤채움부가 노출된 단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2022년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구조를 확인한 후 보수를 진행하였다.
- 성벽 단면 형상화 사례로 주변 연관 성곽인 서울 한양도성의 송례문 양측 성벽의 단면부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의 새로운 복원은 지양하고 최소한으로 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미 멸실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로를 확보하여 등산객으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5) 시설 정비 계획

(1) 기존 탐방로 정비

- 북한산과 인왕산은 예전부터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서울 인근에 있는 산으로 이미 등산로가 대부분 조성되어 있다.
- 인왕산의 주 등산로는 한양도성 탐방로, 탕춘대성 길과 인왕산 기슭에 조성된 무(無)장애숲길인 인왕산자락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탕춘대성길은 능선상에 축조된 토성 상부를 따라가는 오솔길로 대부분 완만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산로이며, 따로 조성된 등산로가 아닌 자연 오솔길로 폭은 약 1~1.5m 정도이다.
- 인왕산 능선상에 위치하는 군부대로 인해 우회할 수 있는 데크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가파른 암반구간에는 암반에 쇠파이프를 박아 지지하고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인왕산구간 중 비교적 가파른 구간인 복원구간에는 목재로 여장 내측에 계단을 조성하고 홍지문 쪽으로 내려가는 우회탐방로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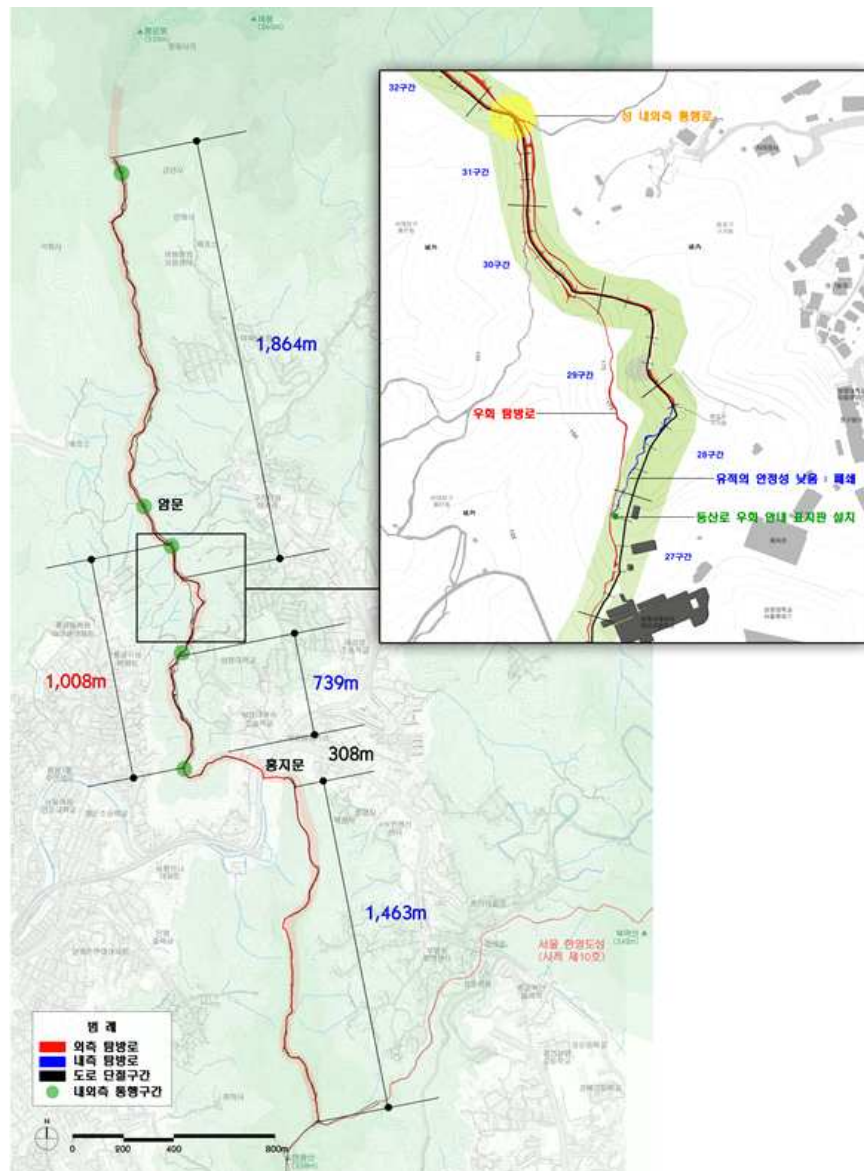
- 도로(세검정로)로 인해 단절된 있는 구간은 인왕산 측으로는 데크를 이용하여 통행로를 조성함으로써 홍지문 측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고, 길 건너 홍제천 옆으로 별도의 보행로를 조성하고 홍지문을 통과하여 서로 연결된다.
- 북한산 구간은 암문(暗門)이 있는 지점부터 향로봉까지 북한산 등산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탐방로등급제¹⁾에 따라 보통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탕춘대성 암문에서부터 향로봉까지 약 1.9km의 거리만큼 성벽을 따라 성 내측에 있다. 암문에서 남측으로 상명대 구간까지는 상명대 구간에서 폭 50cm 정도의 오솔길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등산로가 나 있는 상태이다.
- 탕춘대성의 탐방로는 이미 탕춘대성을 따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탐방로는 탐방객에 의한 세굴(洗掘)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목 뿌리가 드러난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의 정비 방법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탐방로 주변부 훼손 등 본래의 지형이 변형된 지역은 원지형 복구 및 지반안정이 필요한 부분에 원래 지반선 30cm 이하까지 잡석 채우기를 하고, 그 위로 왕모래+잔자갈 채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탐방로 또는 그 주변부 토사유실로 수목 뿌리가 노출된 경우 상부에 식생을 복원하여 수목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경화된 지반은 연화처리하고, 노출된 뿌리는 지형복구를 고려한 보호공을 설치한다. 보호시설은 탐방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말뚝시공 시 뿌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 여름철 수목이 울창하여 탐방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탐방로 주변의 수풀을 장마철 전후에 수목정비 시 좀 더 집중하여 제거한다.
- 홍지문 북측 사유지가 인접하여 건축물이 들어선 구간에 대해서는 단기로는 외측으로 탐방로를 계획하여 연속해서 탐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오간수문을 넘어가 성 내측으로 탐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성벽과 등산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통과하는 지점이 탕춘대성임을 알리고 이로써 좀 더 주의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객에 의한 훼손을 방지한다.
- 탐방이 시작되는 기점에 탕춘대성 탐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좀 더 쉽게 탐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잔존하는 성벽을 통과하는 탐방로는 현재 차단 목책을 세워 진입을 막는 형태로 계획하도록 하며 성곽이 있다는 간단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성곽을 인지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목책 또는 새롭게 설치한 목책에

1) 탐방로등급제란 탐방로를 경사도, 거리, 노면상태, 소요시간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탐방객 자신의 신체조건과 체력에 적합한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탐방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성벽을 볼 수 있는 투명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차단하고 유리 위에 무채색의 튀지 않는 색상을 이용하여 안내문을 기재한다.

(2) 우회 탐방로 정비

- 현재 탕춘대성의 성벽은 기반석 하부 지반침하, 뒤채움부 유실, 등산객에 의한 훼손 등으로 인해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낮아져 있으나, 탐방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에 인접한 탐방로로 통행하고 있다.
- 성벽 구조가 불안정한 구간을 지나는 탐방로의 경우 유적 보존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성벽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우회탐방로를 정비한다. 우회 탐방로 조성 시 경사가 가파른 구간은 일부 절토하여 탐방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절토로 인해 생기는 사면은 식생토낭을 이용하여 보강하도록 하여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에 인접한 탐방로와 우회 탐방로가 갈리지는 분기점에 우회탐방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을 안전하게 우회하여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안내시설 정비

(1) 기존 안내시설 현황

- 기존 탕춘대성에 대한 안내판은 총 2개가 설치되어 있다. 홍지문 내측에 유적 전체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고 철제 프레임 내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 다른 한 곳은 북한산구간 내 암문 외측으로 '탕춘대성의 유래'라는 제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홍지문 내측에 있는 안내판과는 달리 목재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안내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하였다.
- 그 외 종로구에서 설치한 탕춘대성 상층부의 등산로 이용 자제 알림판, 인왕산 등산로 안내판이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암문 내측에 암문 사진 촬영 지점을 표시한 포토 포인트 안내판,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 및 방향 안내판, 금지 안내판, 위험 구간 출입제한 안내판이 있다.
- 탕춘대성을 설명하는 안내표지판 홍지문과 암문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4.8km에 달하는 유적의 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설치된 2개의 유적안내판은 서로 설치한 주체, 디자인, 소재, 내용도 달라 탐방객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므로 통일된 유적안내판이 필요하다.

(2) 안내판 관리 및 개선 정비

- 탕춘대성을 설명하는 안내표지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입지상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안내 및 방향 표지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 탕춘대성의 종합안내판 및 유적 설명판이 필요하고, 성벽 훼손구간 및 우회 탐방로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 주변 연계 유적인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의 상위 계획과 동일한 재질(강화유리, 철제 등)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탕춘대성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픽토그램 등 유적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디자인 기획 개발하여 탐방객에게 탕춘대성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에 삽입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한다.

9. 종합의견

- 본 건물은 탕춘대성(연흥서성)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탕춘대성(1715년~1754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기존 도성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한양도성과 피난성으로 구축한 북한산성 그리고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연결성, 총3개의 성곽이 연결됨으로서 전쟁 시 기능을 원활히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선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 축성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산성 축조 이후 바로 이어서 같은 축조 담당 기관인 총융청이 쌓아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은 유사한 축조방식을 보인다.
- 축성 방법은 전통의 산성축조방식에 따라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는데, 능선의 외벽 면을 이용하여 축조함으로써 산탁(山托)형식을 택하여 편축성(片築城)으로 축조하였다.

또한 숙종 대에 수축한 도성의 축성형식과 북한산성의 성곽축조에 사용된 성돌 형태인 정방형에 가까운 성돌을 사용하여 규격화하고,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려고 한 탕춘대성의 축성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의 축성형식은 북한산성의 축성에 적용하였던 방식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구간의 성벽은 지반이 낮거나 계곡지역은 높게 축조하고, 지반이 높고 암반이나 성 바깥이 급경사진 곳은 낮게 축조하였다.

일부 암반이나 급경사 지역은 성을 쌓은 것과 진배없는 경우에는 여장만 축조하였다.

- 체성(體城)은 인왕산 지역의 일부 토성과 나머지 구간의 석성, 융기된 암반 지대의 자연 암반을 이용한 자연지세(自然地勢) 활용구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토성은 인왕산 지역에만 보이는데 능선을 따라 능선 정상을 따라 토루(土壘)를 조성하였다. 토성은 상단폭을 2~3m 내외로 일정하게 조성하고 자연 지세를 잘 이용하여 주변의 토사를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 그리고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의 역할도 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하는 배후 성이다.
 - 탕춘대성 내에는 50여 칸의 창고가 있었는데, 상창(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 선혜청의 창고도 만들었다. 이후 상창과 중창은 경리청의 창고로 합쳐서 평창이라고 했으며, 하창이 선혜청 창고로 이곳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이나 북한산성에 공급하였다.
- 또한 탕춘대성은 대부분 구간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유적의 잔존상태가 좋아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
- 따라서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3성이 하나의 방어 성곽으로서 기능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가지며,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산 능선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토석, 석성으로 합리적으로 축조한 점, 이와 관련 시설인 창고시설과 다양한 유적들이 잘 남아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지번을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하고 합리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12차 위원회('23.12.13.) 보류 : 현지조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일원
- (3) 신청내용
 - 지번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 : 85필지(31,045㎡)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누락필지추가	6	12,169	11,975	기고시 면적과 상이
등록추가	15	(216)	(2,427)	기고시 면적과 상이
분할추가	47	309	309	기고시 면적과 상이
신규등록	3	3,850	3,850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제외	(4)	(1,734)	(1,734)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합병말소	(10)	0	0	
면적상이		10,829	9,481	기고시 면적과 상이
면적정정		(6,071)	(1,269)	기고시 면적과 상이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 지번 현행화 포함

- 기존(안)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신청 면적				조정 후 면적*	
			추가 지정 면적		해제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74,928
문화재구역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54,743

- 보완(안)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신청 면적				조정 후 면적*	
			추가 지정 면적		해제면적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계	2,314	25,439,329	68	542,866	516	956,499	1,936	25,084,568
문 화 재 구 역	2,314	25,439,329	68	542,866	516	956,499	1,936	25,084,568

(4) 조정 사유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05./문화재위원 ○○○, ○○○, ○○○)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해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의 지정(해제) 조사보고서 1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12.5.(화)	대상문화재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조사자	성 명	전문분야	소속	직위(직책)
	○ ○ ○	건축학	○○대학교	교수
	○ ○ ○	한국사	○○대학교	교수
	○ ○ ○	고고학	○ ○ ○ ○ ○ ○ ○ ○ 연구소	소장
주요 지정 (해제)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사적		
	문화재 명칭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제출자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12. 05.(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남산 일원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장소다. 경주 남산은 경주시의 남쪽에 솟아오른 산으로, 금오산(金鰲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쪽에 위치한 금오산과 북쪽에 위치한 고위산(高位山) 사이를 연결하는 산과 계곡 일대를 남산이라고 통칭한다. 금오산의 높이는 466m이고, 고위산의 높이는 495m이다. 남북의 길이는 약 8km, 동서의 너비는 약 4km이다. 지형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 남산은 산등성이 대 부분은 화강암의 암반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화강암 풍화토(일명 마사토)로 되어 있다.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구분되는데, 동남산 방향은 경사가 급하고 사면의 길이가 짧은 반면, 서남산 방향은 동남산 방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사면의 길이가 길다. 동남산과 서남산에는 제각기 16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도 2개의 계곡이 있어 남산에는 모두 34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 경주 남산 일원은 마치 불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가 신라에서 크게 융성하면서 남산일대는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조각이 곳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 유물과 유적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산을 경배하는 숭산신앙(崇山信仰)과 암석을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는 암석신앙(巖石信仰)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 『삼국유사』에는 남산에서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성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까닭에 남산에 얽힌 전설이 많은 편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남산 기슭의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남산의 산신이 나타나 헌강왕에게 신라의 멸망을 경고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보물), 경주 포석정지(사적), 경주 남산신성(사적) 등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유산 465개(국가지정 25개, 시·도지정 15개, 비지정 425개)가 남산에 위치한다.

- 경주 남산 일원은 1985년 02년 23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 되어왔던 곳이다.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불교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들이 남아있어 신라문화의 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주 남산 일원 도시계획



경주 남산 일원 위성사진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의 오악 중 북악이자, 사령지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왔던 장소이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1280년경) 편찬된 『삼국유사』 권제1 경주시 남쪽에 위치한 남산(南山)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의 산이다.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봉(金鰲峰), 466m과 남쪽의 고위봉(高位峰), 494m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과 계곡 전체를 남산이라 한다. 금오산(金鰲山)은 산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금 거북이(또는 자라)가 엎드린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라의 사령지(四靈地)로 4곳의 영험한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강 왕대에는 남산의 산신(山神)이 나타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다는 전설도 있다. 이는 남산이 그만큼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진평왕대에 남산신성(南山新城)이나 고허성(高墟城)과 같은 산성을 쌓은 것을 보면 방어의 요충지 역할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가의 큰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자 왕족 또는 귀족들이 다니는 일상적인 공간 그리고 종교 활동을 벌이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남산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을 비롯하여 나정(蘿井), 남산신성(南山新城), 포석정(鮑石亭)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흩어져 있다. 남산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남산에 소재한 여러 유적에 대

해서는 개인 연구자와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 또는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은 산성터(山城址) 4개소, 절터(寺址) 150곳, 석불(石佛) 129구, 석탑(石塔) 99기, 석등(石燈) 22기 등으로 다양하다.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5.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근거기준

□ 조정 필요성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 기존 문화재구역 내 자연마을 및 주거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현실 반영 필요

□ 조정 기준

* 조정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구분

○ 추가 지정 기준

- 발굴조사 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1구역, 도당토성)
- 정비목적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10구역, 열암곡 마애불 동쪽)
- 기존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4구역, 9구역)
 - 매장문화재 폐사지로 설정(4구역) · 매장문화재 청동기유적(9구역)

○ 해제 기준

- 기존 마을 및 마을 인근 전, 답, 대지의 지목(2구역, 3구역, 5구역~8구역, 12구역)
 -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지역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구역, 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 주거지와 농경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인근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개별심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례(3구역)
 - 경관저해여부를 고려하여 제외
 -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는 곳을 참고하여 제외
- 남산 내 문화재(도지정,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가 없는 지역(11구역)
-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통일전(13구역) 및 화랑교육원(14구역))

6. 조정 대상 및 범위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 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지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한 해제 검토가 필요함

□ 기 고시 분할 및 합병 조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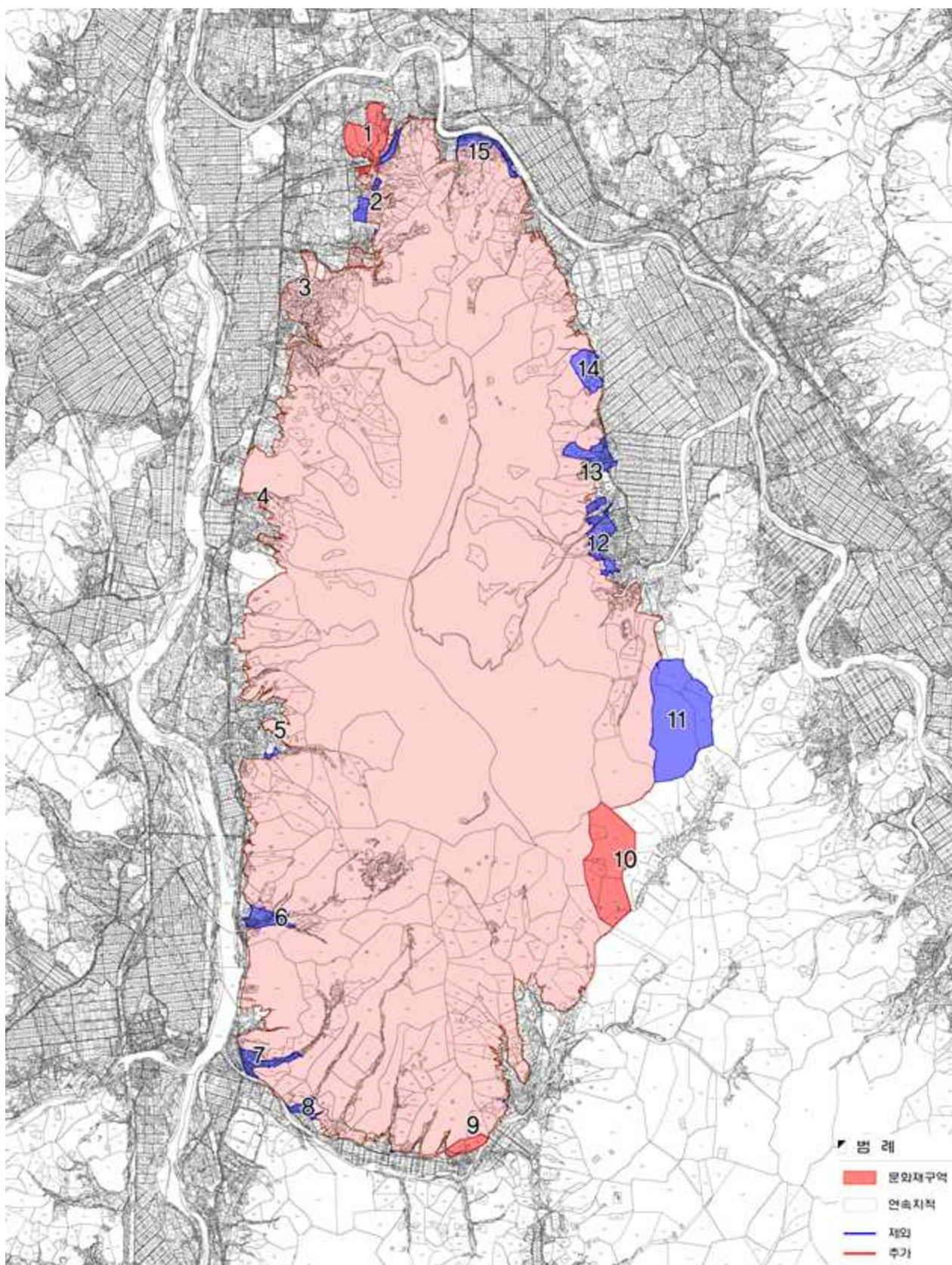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5-6번지 일원
- 신청 면적 : 85필지(31,045㎡)
- 신청 사유 : 既 고시에서의 누락필지, 등록·분할 추가, 신규 등록 등으로 정정 필요
- 신청내용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누락필지추가	6	12,169	11,975	기고시 면적과 상이
등록추가	15	(216)	(2,427)	기고시 면적과 상이
분할추가	47	309	309	기고시 면적과 상이
신규등록	3	3,850	3,850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제외	(4)	(1,734)	(1,734)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합병말소	(10)	0	0	
면적상이		10,829	9,481	기고시 면적과 상이
면적정정		(6,071)	(1,269)	기고시 면적과 상이

□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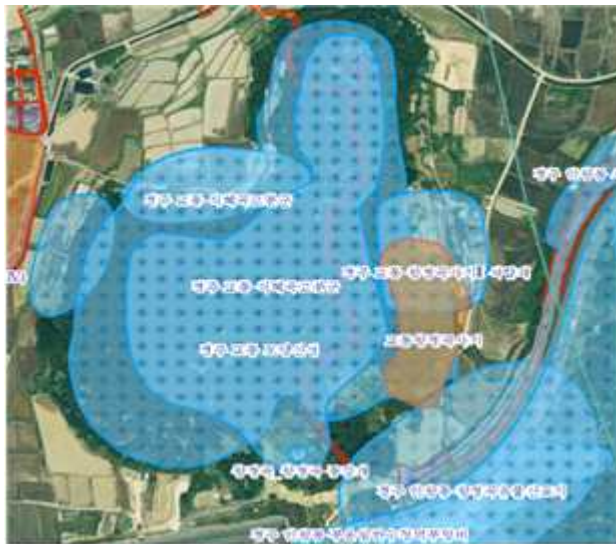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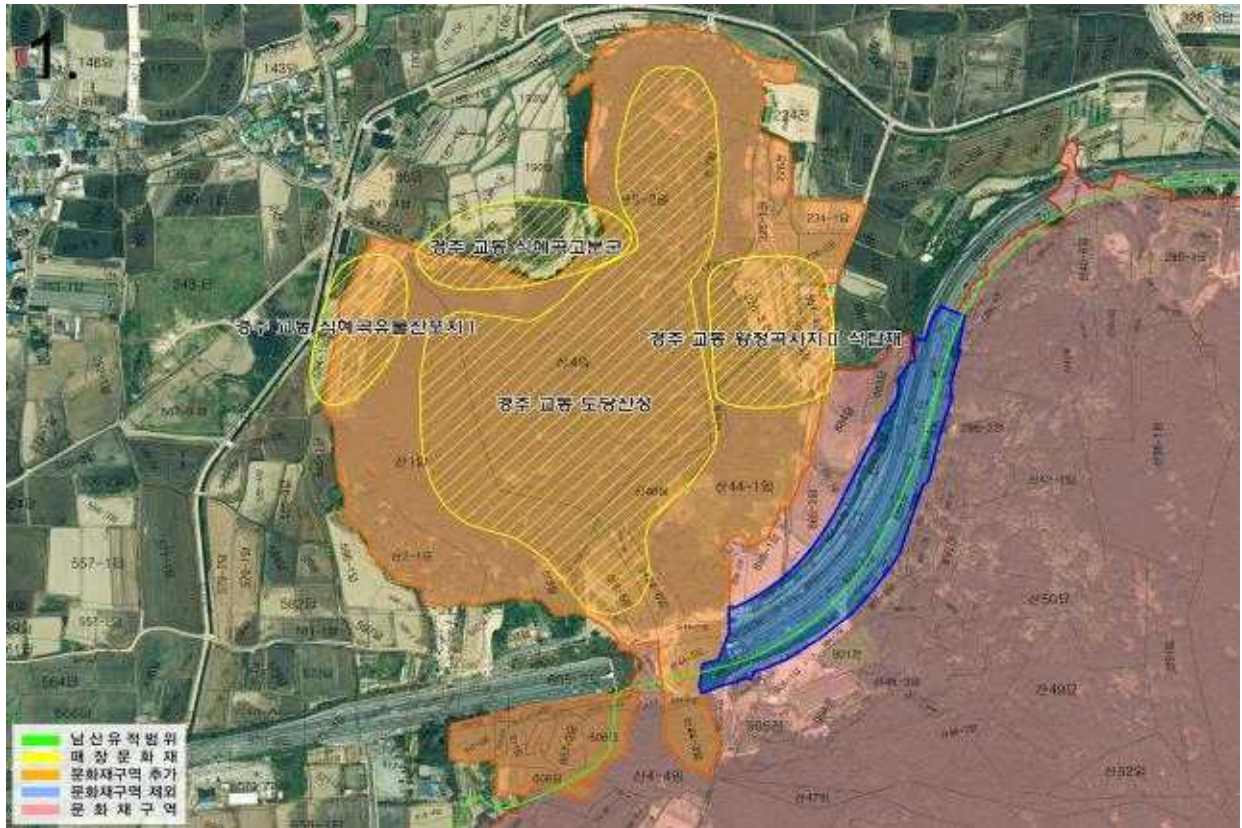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66 일원
- 신청 면적 : 68필지(542,866㎡)
- 신청 사유 : 발굴 및 정비 등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신청 내용

소재지	추가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교동	10	77,694	77,694	
내남면 노곡리	15	381,816	381,816	
배동	3	8,221	8,221	
인왕동	11	28,139	28,139	
탑동	29	46,996	46,996	
합계	68	542,866	542,866	



■ 1구역_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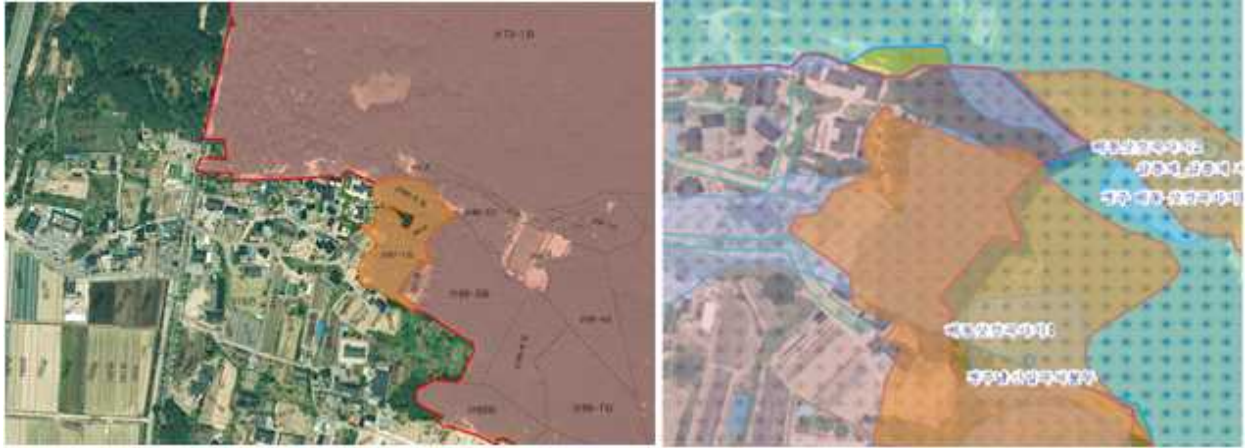
도당산 토성으로 일컫는 곳으로 2000년, 2013년, 2015년에 성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3세기 중엽~6세기 말 축조된 토성임이 밝혀진 성이다. 남산과 함께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은 곳으로 신라 왕성에서 조망할 때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도당산 토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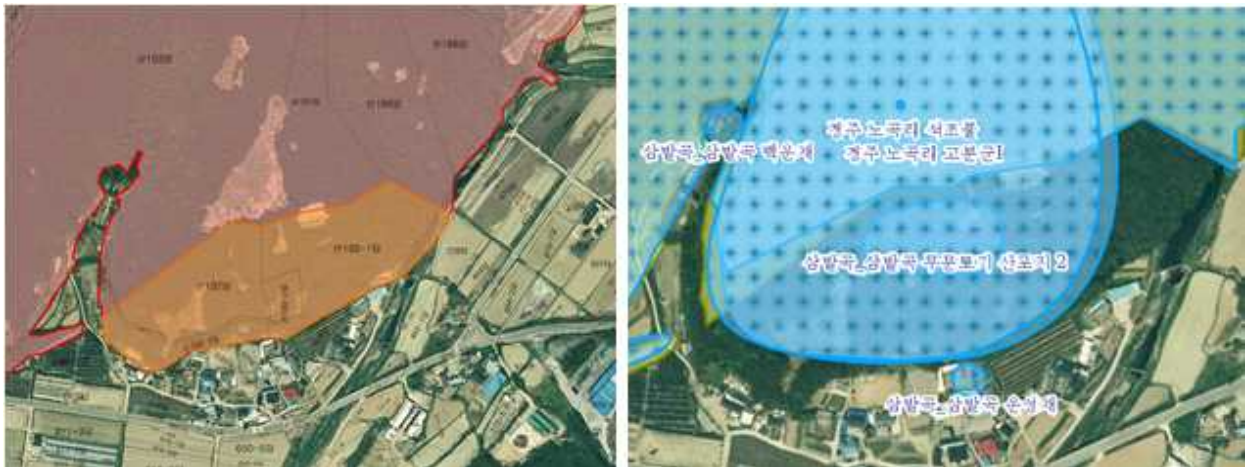
■ 4구역_추가 지정

삼릉과 경주 경애왕릉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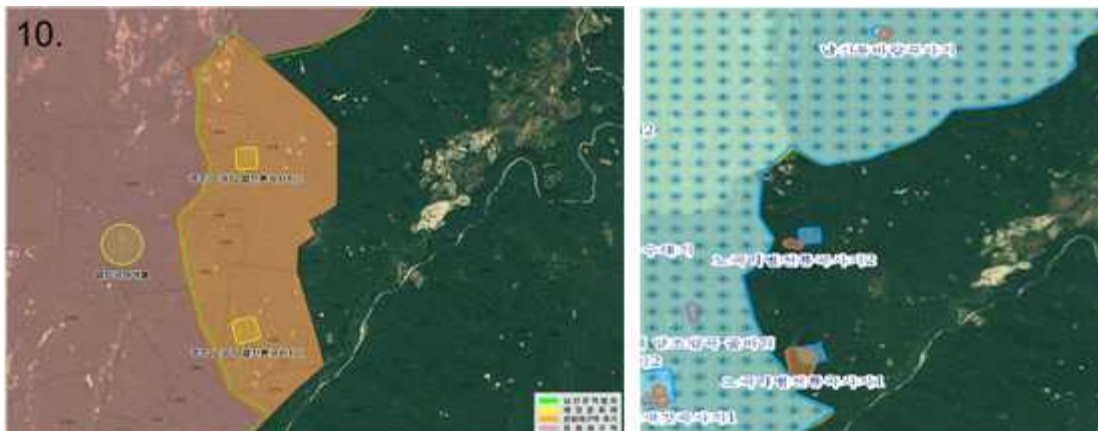
■ 9구역_추가 지정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기존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0구역_추가 지정

천룡사지 아래에 위치한 노곡리 별천룡곡사지1,2 유물산포지로 기존 남산 일원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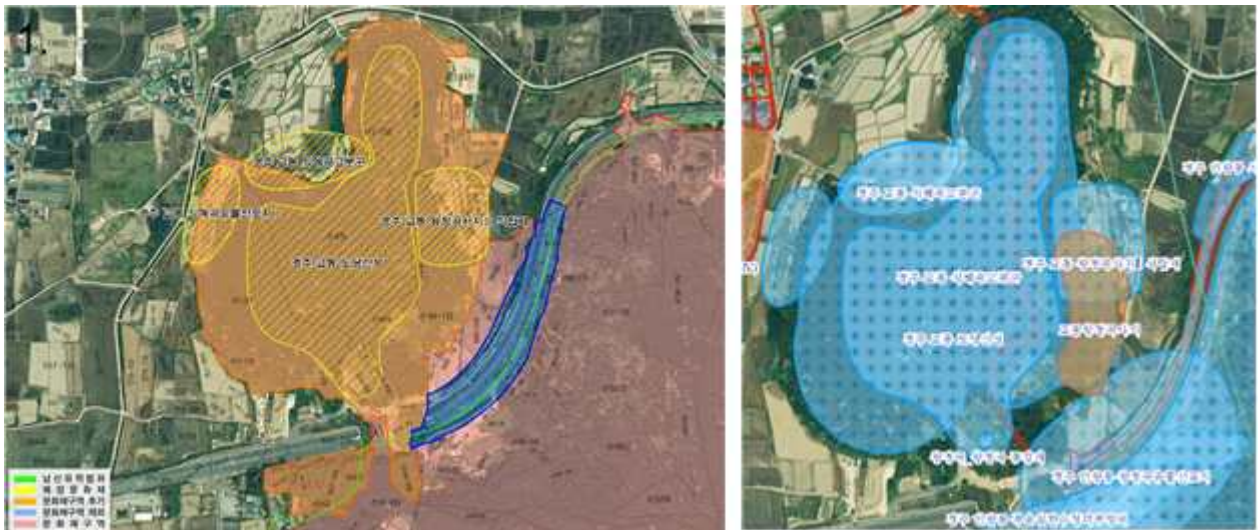
□ 해제 대상 및 범위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35 일원
- 신청 면적 : 516필지(956,499㎡)
- 신청 사유 :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 신청내용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전체 해제	503	867,548	857,945	
일부 해제	13	165,522	98,554	
합계	516	959,577	956,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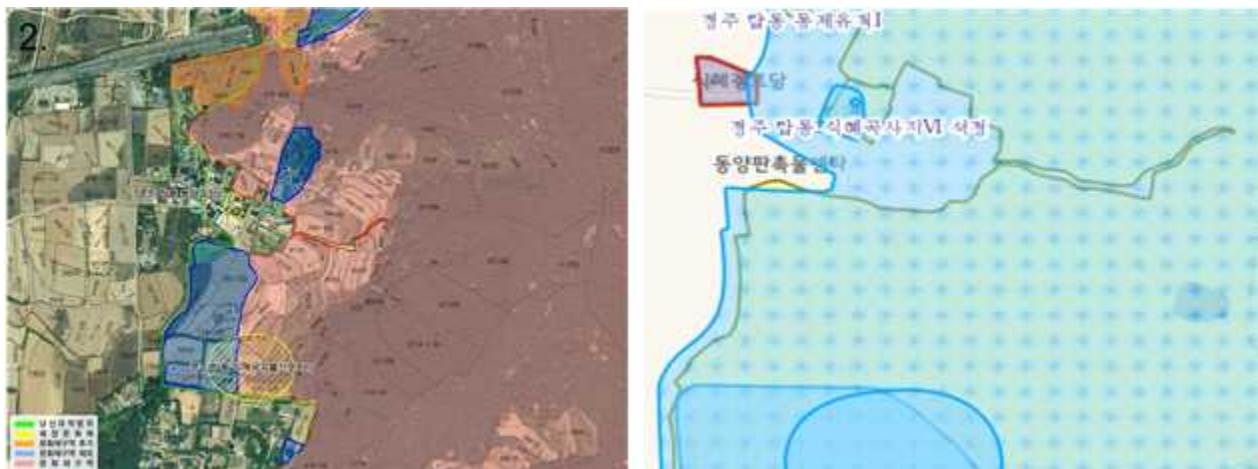
■ 1구역_해제

도당산 토성과 남산 사이의 도로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2구역_해제

식혜골 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월암종택’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기존 마을과 농경지, 산지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지를 제외한 유적분포가 없는 기존마을, 답, 대의 지목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3구역_해제 → 현행 유지

■ 5구역_해제

용장골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임야를 제외한 시설물이 설치된 전, 답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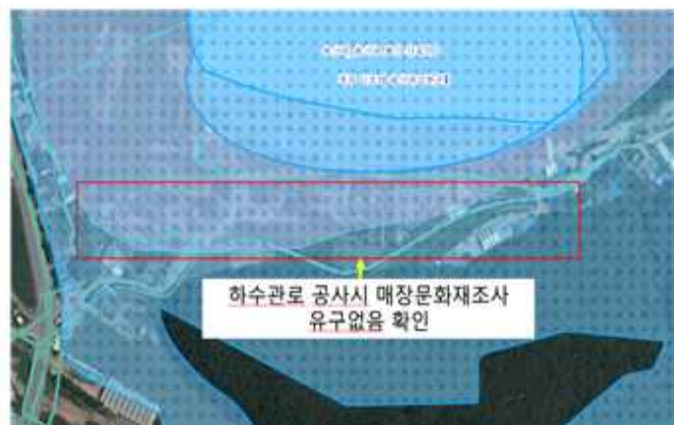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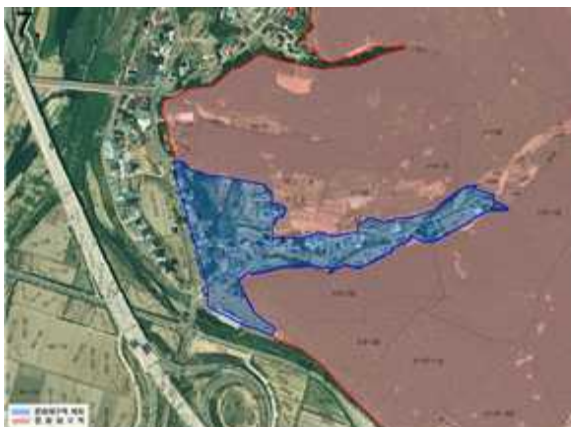
■ 6구역_해제

틈수골에 위치하는 마을로써 기존 임야와 마을이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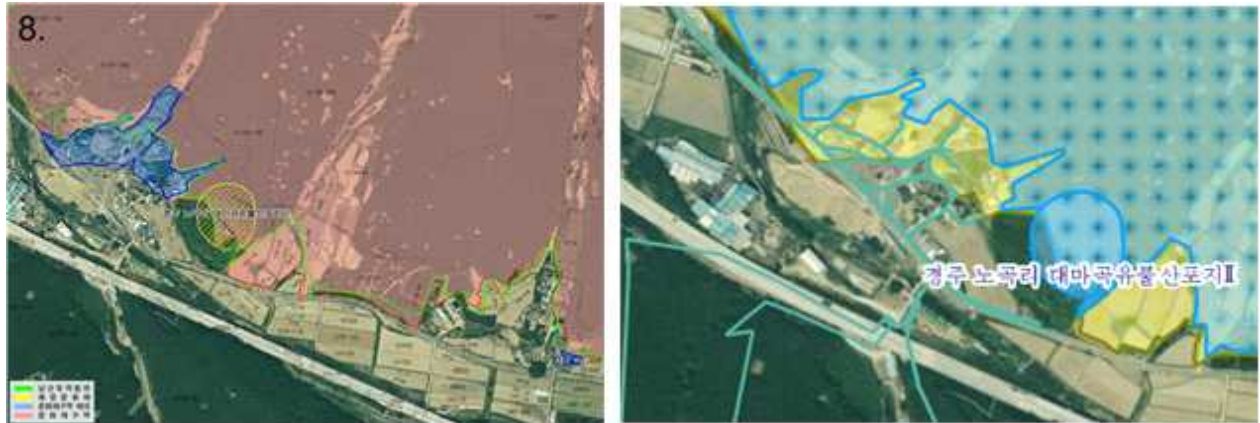
■ 7구역_해제

기존 마을과 임야를 함께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8구역_해제

남산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과 농경지로 임야를 제외한 대, 전, 답 등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1구역_해제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얇은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2구역_해제

염불사지 주변 지역으로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기존 마을과 농경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3구역_해제

통일전이 위치한 곳으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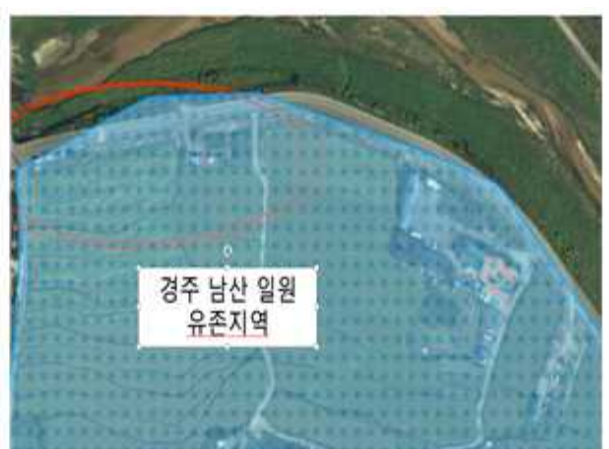
■ 14구역_해제

화랑교육원이 위치한 곳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5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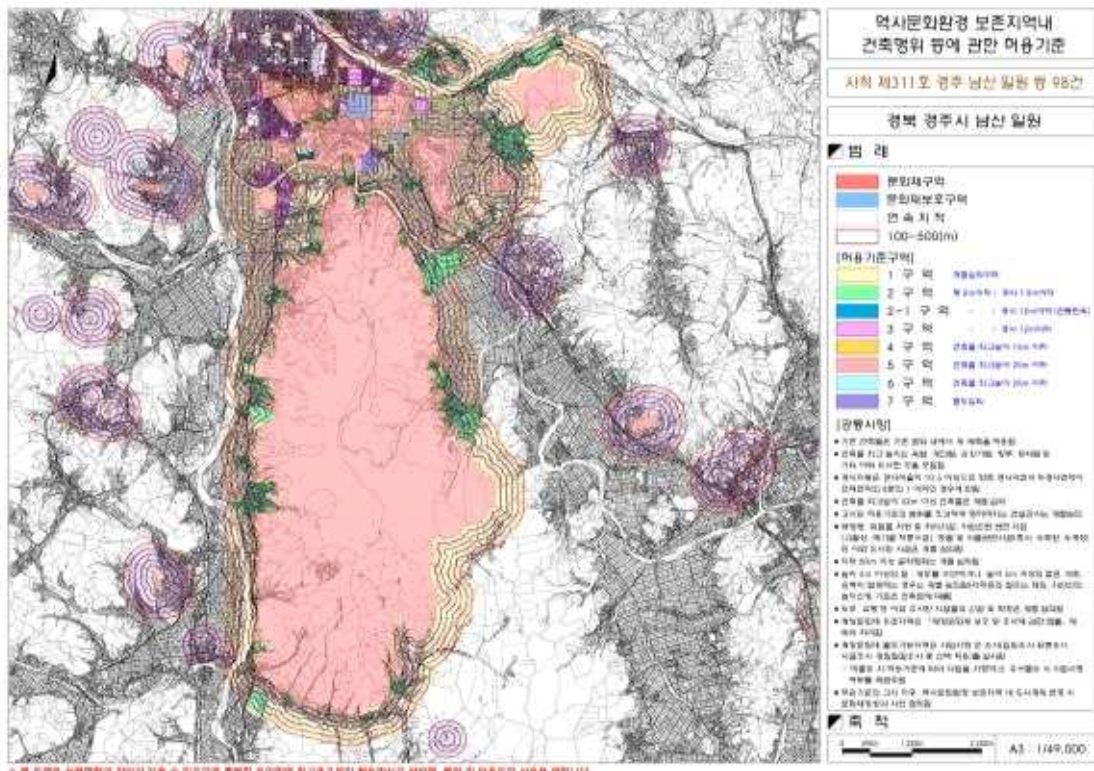
남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일부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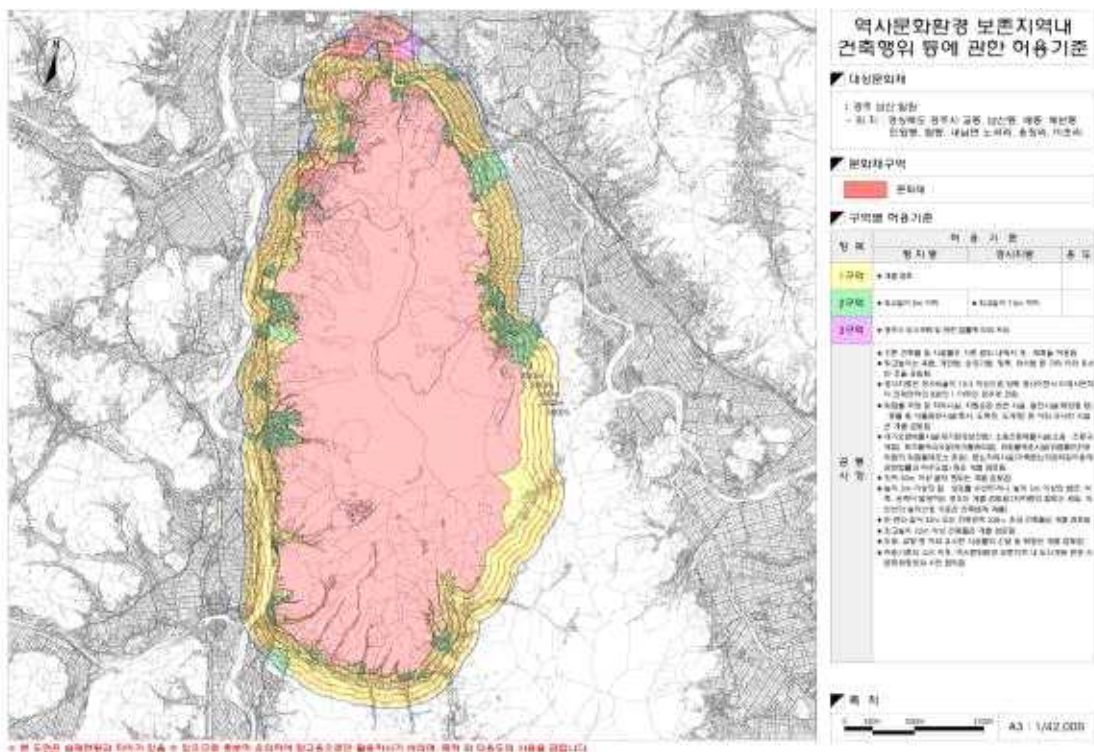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문화재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 1구역(개별심의)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기준안(도면)-통합고시 도면



- 변경 기준안(도면)-경주 남산 일원 발채 도면



구분	범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 별도 심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 지역은 남산으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남산의 경관을 최대한 살려 원형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길’의 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존 정비 및 활용 기본방향
 -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사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고증을 통한 문화유산의 원형 유지할 수 있는 복원·정비 방향 수립
 - 도심 인접 문화유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존, 정비, 활용 계획 수립
 - 홍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스마트 활용기반 구축

- 관리운영 방향
 -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안내 등을 통한 서비스 관리 강화
 - 분산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화재,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9. 종합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지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된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신청 지역 세부적인 검토 내용
 - 1구역[도당토성] : 남산 일원에 포함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제의 경우 기 지정 문화재구역은 현상을 유지하고 도로부분만 해제하는 것을 검토 필요
 - 2구역[기존 마을과 전답(경주 월암종택)] :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고 전, 답 등은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기를 검토함. 임야에서 떨어진 전, 답은 해제는 별도로 검토 필요
 - 3구역[기존 마을과 전답(창림사지 삼층석탑)] : 창림사지는 계단상으로 조성된 사찰로서 열린 조망권이 중요하므로 문화재구역 유지 필요
 - 4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삼릉, 경애왕릉)] : 유적 보존 가능성이 높은 임야이므로 추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필요
 - 5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전, 답] : 문화재구역에 면한 전, 답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건조물 구역만 해제 검토 필요
 - 6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마을 구역은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는 문화재구역 유지 검토 필요
 - 7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구역은 문화재구역 해제 검토 필요
 - 8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전, 답] : 마을에서 떨어진 남동측 지역(780전)과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지역은 문화재구역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에 접하는 전, 답은 문화재구역(797답 이상) 유지 검토 필요

- 9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필요
- 10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별천통곡사지의 유물 산포지와 그 주변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은 필요하나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11구역[문화재 분포가 없음] :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검토 필요
- 12구역[문화재와 기존마을] : 주택 등 건조물이 조성된 구역은 문화재구역의 해제를 고려하나, 원지형이 살아있는 전, 답 대부분은 문화재구역으로 유지 검토 필요
- 13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통일전)] : 통일전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4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화랑교육원)] : 화랑교육원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5구역[기존 마을과 전답] : 남산에 접해 있는 구역은 열린 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을 유지하며, 남산 아래 자락의 도로와 인접한 부분은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4-01-034

1. 2024년도 유적관리소 보수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24년도 유적관리소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정비사업과 수목 병충해 방제 등 조경 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현충사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의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다. 사업내용

- 신청인 : ○○○○
-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 1967.03.18. 지정),
아산 이충무공묘(사적 / 1963.01.21. 지정),
남원 만인의총(사적 / 1981.04.01. 지정),
금산 칠백의총(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48 등
- 사업기간 : 2024. 2~12월
- 사업내용

시행기관	대상문화재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신청자
현충사 관리소	아산 이충무공 유허 (아산 이충무공묘 포함)	충무문 기와변화 등 보수공사	645,000	현충사 관리소장
		관람로 포장공사	524,000	
		현충사 달빛야행(야간개방 행사)	200,000	
만인의총 관리소	남원 만인의총	배수로 정비공사	170,000	만인의총 관리소장
		역사문화관 홍보전광판 설치	500,000	

시행기관	대상문화재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신청자
	유적관리소 공통사항	수목식재, 수형관리, 제거, 이식 등 조경관리		유적 관리소장
		방화선 정비,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관리		
		관람로 등 관람시설물 유지보수		
		방법방재시스템 등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설해, 풍수해 등 피해(응급) 복구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미한 보수 정비 사항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적관리소 보수정비 사업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공사, 용역, 경상관리 등) 추진
- 추후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 별도 보고하여 사업 추진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양양 낙산사 일원」 내외 숲가꾸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3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양양 낙산사 일원	강원도 양양군	○○○	<숲가꾸기>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9-1 외 5필지(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대상면적 : 15.15ha - 핵심구역 : 숲아베기 0.75ha, 중층가꾸기 0.75ha, 산물수집 19.52m³ - 일반구역 : 숲아베기14.4ha, 임내정리 15.93m³	허가	'23.12.20.
사적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평리 25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설치위치 : 건물 지붕 위(1동, 3동) - 설비용량 : 99.825kW(1동 36.3kW, 3동 63.525kW) - 설치면적 : 1동 157.5m², 3동 239.4m² - 설치높이 : 1동 7.22m, 3동 8.155m	허가	'23.12.14.
사적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90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9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설치위치 : 건물 지붕 위 - 설비용량 : 19kW - 설치면적 : 84.32m² - 구조물 높이(설치높이) : 2.1m(설치 최종높이 5.8m)	허가	'23.12.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충남 공주시	○ ○ ○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29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5,824㎡ - 건축면적(연면적) : 675.29㎡(864㎡) - 최고높이 : 19m(지상 4층) - 토목공사 : 절토 0.01m~4.6m(9,112㎡), 성토 0.01m ~ 5.8m(27,053㎡) ○ 허가조건 : 인공암벽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적용할 것	조건부 허가	'23.12.06.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 ○	<기산지구급경사지 정비>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산리 산 12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829㎡ - 수로관설치 L=82m, PE배수로 설치 L=96m, 옹벽블럭 설치 L=90m, 교목 식재 등 ○ 허가조건 : 참관조사 후 시행	조건부 허가	'23.12.17.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 ○	<단독주택 신축(4동)(2차 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0-1번지 등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714㎡(진입로 224㎡ 포함) - 건축면적/ 연면적 : 424.83㎡(3동 각 91.36㎡, 1동 150.75㎡=가동 108.15㎡+나동 42.6㎡)/ 424.83㎡ - 건축규모/ 최고높이 : 지상 1층(3동), (가동)지상 1층 (나동)지하 1층(1동=가동+나동)/ 5.5m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 보강토 옹벽 설치(변경) · 변경 전 : 276.25m(H=0.0~4.3m) · 변경 후 : 276.25m(H=0.0~4.5m) - 콘크리트포장(T=20cm) : A=224㎡ - 절·성토량(최대높이)-변경 · 변경 전 : 절토 108.56㎡(H=4m)/성토 71.05㎡(H=3.2m) · 변경 후 : 절토 51.39㎡(H=2.7m)/성토 132.29㎡(H=4.5m)	허가	'23.12.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근린생활시설 신축, 판매 및 영업시설 부지 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02, 20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0m 이격/7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825㎡ - 토목공사 · 토공 : 흙깎기(H=10.1m) 6,571㎡, 법면다짐(L=53.6m) 104㎡ · 구조물공 : L형 옹벽(H=0.0~9.0m, 계단식 3m×3개) L=288m	허가	'23.12.28.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도시계획도로(소로2-55호) 개설>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71-24번지 등 5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20m 이격/5, 7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도로조성 A=1,792㎡ - 규모 : L=147.3m, B=8m 1) 토공 : 흙쌓기 40㎡(최대성토고 H=0.24m), 흙깎기 3,192㎡(최대절토고 H=5.67m), 사토운반 3,455㎡, 되메우기 74㎡, 터파기 98㎡ 2) 구조물공 : L형옹벽(H=1.5~5.5m) L=106m 3) 배수공 : 우수관(D600) L=33.0m, 우수받이 설치 5개소, 측구수로관 설치 L=214.0m, 연결관 부설(D300) L=18m 4) 우수공 : 우수관(D600) L=33m, 우수받이(D300) L=14m, 4개소, U형트렌치 L=219m, 우수맨홀 1개소 5) 포장공 : 아스콘포장(T=59cm) A=859㎡, 덧씌우기(T=5cm) A=138㎡ 6) 부대공: 도로반사경 2개, 안전휀스 L=84m, 교통표지판 5개, 차선도색 129㎡	허가	'23.12.28.
사적 관문성	울산시 북구	○○○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설치> ○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 101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9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362㎡ - 규모 : 18㎡(3m×6m), H=4.8m/1개소 ○ 허가조건 - 3년 존치 가능하며 연장 설치 시 재허가 필요함.	조건부 허가	'23.12.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부산시 연제구	○ ○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955, 79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1) 연산중학교 - 설비용량 : 67.2kW - 설치면적 : 335.41㎡ - 모듈규격/수량 : 2,462×1,134×35mm/112장 - 설치형태 : 건물 지붕 일체형 2) 연동초등학교 - 설비용량 : 23.4kW - 설치면적 : 108.88㎡ - 모듈규격/수량 : 2,462×1,134×35mm/39장 - 설치형태 : 건물 벽체 일체형	허가	'23.12.22.
사적 금정산성	부산시 금정구	○ ○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398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80m 이격 /1, 5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744㎡ - 건축(연)면적 : 132.6㎡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최고높이 4.7m(난간 1.2m 제외 높이)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평지붕) - 토목공사 · 토공 : 흙쌓기(H=0.2m) 14.0㎥, 흙깎기(H=-1.0m) 58.9㎥, 사토 43.3㎥ · 구조물공 : 전석쌓기(H=1.2m) L=28.0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조건부 허가	'23.12.28.
사적 창녕 계성 고분군	경남 창녕군	○ ○ ○	<단독주택 증축>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17-2(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44㎡ - 건축면적 : 141.6㎡(기존 97.48㎡ + 증축 44.12㎡) - 층수(높이) : 1층(4.4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판넬	허가	'23.12.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불국사	경북 경주시	○○○	<동리목월 문학길 보행로 개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41-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보행로 개설(L=319m) - 터파기 57.0㎡, 되메우기 36.0㎡ - 보행매트 L=275m - 데크로드(B=2m, L=35m), 데크계단(1개소, B=2m, L=9m) - 목재난간(L=107m), 목재로프난간(L=330m) - 매쉬웬스 H=1.8m L=14.0m	허가	'23.12.14.
사적 경주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	<2024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26-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무대 30평(백드롭) - 70m 해룡 포토존(에드벌룬 형식, 2~3m 여의주 3구 포함) - 몽골텐트 규격, 수량 : 5×5 15동 - 조명 : LED PAR 20대, LED 무빙 20대(트러스 or 레이어 설치) - 음향 : 5kW(PASYSTEM) 스피커, POWER앰프, EQ, CDP, 챔바, 유무선마이크, 16채널 믹서기 2대 등 - 테이블 30개, 의자 500개 - 행사 기간 : 2023.12.31.~2024.1.1.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3.12.14.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2023 제야의 종 타종식>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관객석 : 의자 2,000개 - 난로 : 30개 - 부스 : 5m×5m 천막 11개 - 콘솔 : 4m×6m×6m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3.12.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천군동 사지	경북 경주시	○ ○ ○	<보덕 천군소하천 천군 제3교 재가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1617-13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흙깎기 2,200.0m³, 터파기 3,920.0m³, 흙쌓기 655.0m³, 되메우기 1,564.0m³ - 암거, 날개벽, 접속슬래브(15.0×3.0) : N=1.0개소 - 옹벽(H=5.0~4.0) : N=1.0개소 - 가시설 : N=1.0식 - 식생옹벽블록(H=3.0) : L=78.5m - 석축(H=1.0) : L=57.0m - 암거(1.5×1.5) : L=9.0m - 이중벽관(Φ600) : L=61.0m - L형측구(T-A,B) : L=168.5m - 보차도경계석 : L=168.5m - 도로경계석 : L=143.5m - 기타공사 : N=1.0식 - 아스팔트포장 : A=2,227.0m² - 소형고압블록포장 : A=353.0m² - 투수콘포장 : A=104.0m²	허가	'23.12.18.
사적 경주 천군동 사지	경북 경주시	○ ○ ○	<야영장 시설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1 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 : 2,177m²/49.68m²(지상 1층, 1동) - 구조 : 경량철골조 - 건물높이 : 4.55m - 절토량 519m³, 성토량 2,336.8m³ - 자연석쌓기 : H=0.5~2.5m, L=48.0m - 식생옹벽블럭 : (H=4.3~4.5,L=73.0m), (H=1.2~2.2,L=40.0m), (L=43.0m), (H=0.5~1.7, L=9.0m), (H=0.3~0.5, L=26.0m) - 우수관 : PE300mm, L=145.0m - 우수집수정 : 0.6, 14.0개소 - 조경조성(나무 및 잔디) 및 차폐조경 설치 - 벤치플림관 : B300mm, L=37.5m	허가	'24.01.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명활성	경북 경주시	○ ○ ○	<경감로(숲머리길~명활성) 인도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11-6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인도포장 A=208.0㎡, B=2.6m, L=88.0m - 식생블럭 H=0.75~1.25m, L=84.0m - 안전시설물 설치 1식	허가	'23.12.18.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 ○ ○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4 외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임시주차장 설치 10,400㎡(소형180대) -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 당초사용기간 : '15.06.16~'17.06.15. · 1차 연장기간 : '17.06.16~'19.12.31. · 2차 연장기간 : '20.01.01~'21.12.31. · 3차 연장기간 : '22.01.01~'23.12.31. · 금회 연장기간: '24.01.01~'25.12.31.	허가	'23.12.18.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 ○	<배반동 내리마을-양지마을 농로연결>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758-1(시점),762-2(종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터파기 735㎡, 되메우기 689㎡, 잔토 47㎡ - 구조물공 : 반중력식옹벽(H=1.5~2.2m, L=113m),익벽 (H=0.8m, L=24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790㎡	허가	'23.12.21.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 ○	<노유자시설(경로당)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587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8.3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규모/높이 : 1층/6.0m - 담장(메쉬웬스) : H=1.5m, L=134m - 석축 : H=2.5m, L=47m, 배수계획 300mm - THP우수관(인근구거연결), 조경수 식재 54㎡ - 콘크리트포장 : 380㎡, 일부분 0.8m 성토(침수방지)	허가	'23.12.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	<진입로 포장 및 배수 개선> ○ 위치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번지 등(문화재구역, 보호구역) ○ 사업내용 1) 동문 북측 구간 : 흙콘크리트 포장 (A 583.5㎡, L 116m, W 3.7~8.7m, T 0.2m), 우수관 매립(연장 130m/굴착 최대 깊이 0.8m, 폭 0.5m), 맨홀 3개소 설치 등 2) 남문 서측 구간 : 기존 포장 철거 후 흙콘크리트 포장(A 458㎡, L 78.3m, W 4.4~5.9m, T 0.2m), 우수관 매립(연장 81m/굴착 최대 깊이 0.8m, 폭 0.5m), 맨홀 3개소 설치 등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발굴제도과) 협의 및 매장문화재 조사 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2.18.
사적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농업용 저온창고 신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298-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온창고 1동 신축(면적 10㎡, 높이 2.5m) ○ 허가조건 - 3년 존치가능하며 연장 설치시 재허가 필요함.	조건부 허가	'23.12.20.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196-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8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지붕 위 설치(건물 높이 8.25m, 태양광 시설 설치 시 9.3m (1.05m 증)) - 태양광 모듈 33매, 91.15㎡	허가	'23.12.20.
사적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전북 정읍시	○○○	<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1025, 1025-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5.2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 모듈 2,290㎡(2.7919㎡×820매), 최고높이 3.7m	허가	'23.12.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군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표지석 설치>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65-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L=1.5M, H=2M, B=0.6M - 허가기간 : 2023.12.26.~2024.01.31.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공무원 참관	조건부 허가	'23.12.26.
사적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경기도 화성시	○○○	<공동주택 신축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7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3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7,931㎡(부지 7,528㎡/도로 403㎡) - (역)L형 옹벽설치 : H 0~5m, L 979m - 절·성토 : -7.6~7.5m	허가	'23.12.11.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351번지 1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80.24㎡ - 태양광 최대높이 : 12.7m(기존 건축물 높이 7.9m) - 설비용량 : 40kW	허가	'23.12.11.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수목정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2번지 2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 : 소나무 3주 - 수목 지지대 설치 : 소나무 2주 - 수목 전정 : 14주	허가	'23.12.11.
사적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4번지 13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330㎡ - 건축면적/연면적 : 163.2㎡/231.9㎡ - 층수/높이 : 2층/7.4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 포장 : 150㎡(T 0.2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3.12.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자동 134번지 12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897㎡ - 건축면적/연면적 : 273.8㎡/495.0㎡ - 층수/높이 : 2층/7.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 용벽 : H 3.0m이하, L 60m - 콘크리트 포장 : 576㎡(T 0.2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3.12.11.
사적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77번지 13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432㎡ - 건축(연)면적 : 154㎡ - 층수/높이 : 지상 1층/7.8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식생토 용벽설치 : H 0.3m ~ 2.8m, L 43.5m - 포장(아스콘, 잡석) : 235㎡(T 200~900m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3.12.26.
사적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77번지 22호, 78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335㎡ - 건축(연)면적 : 96㎡ - 층수/높이 : 지상 1층/5.8m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식생토 용벽설치 : H 0.3m ~ 2.2m, L 42.2m - 포장(아스콘, 잡석) : 155㎡(T 200~900m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3.12.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도로조성>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77번지 14호 외 10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1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4,861㎡(부지 3,989㎡, 도로 872㎡) - 건축(연)면적 : 768㎡(96㎡ 8동) - 층수/높이 : 지상 1층/5.8m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용벽(보강토, 식생토) : H 0.3m~4.4m, L 396m -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잡석) : 3,245㎡(T 50~900mm) - 도로 경계석 설치 : 190m(200×250×1,000m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3.12.26.
사적 청주 정북동 토성	충북 청주시	○ ○ ○	<농산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추가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39, 451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산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3동 · 건축면적 473㎡(5.5m×86m), 높이 3m - 작업동 비닐하우스 2동 · 건축면적 90㎡(5m×18m), 높이 4.5m (1동) · 건축면적 114㎡(6m×19m), 높이 3.6m (1동) - 농산물저온저장고 1동 · 건축면적 8㎡(2m×4m), 높이 2.3m - 가설건축물(농막) 1동 · 건축면적 18㎡(3m×6m), 높이 2.6m - 창고시설(조립식) 1동 · 건축면적 4.25㎡(1.7m×2.5m), 높이 2.5m ○ 허가조건 - 3년마다 재심의 받을 것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4.01.05.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